

탁아월등의 길잡이 1994년 10월호 창간호 92.5.25. 창간 24호 발행인 최현숙

우리네 아이들

94. 10월호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탁아활동의 길잡이 1994년 10월호 첫발행 92.5.25. 통권 24호 발행인 최현숙

우리네 아이들

94. 10월호

- 그림책과 어린이 / 최현숙
〈부록〉 유아를 위한 요리편지 / 최현숙
● 좋은 그림책 소개 / 21
● 김갑배선생 / 22
● 어린이 책읽기 / 23
● 새날의 아침 / 24
● 책 읽기 / 25
● 책 읽기 / 26
● 책 읽기 / 27
● 책 읽기 / 28
● 책 읽기 / 29
● 책 읽기 / 30
● 책 읽기 / 31
● 책 읽기 / 32
● 책 읽기 / 33
● 책 읽기 / 34
● 책 읽기 / 35
● 책 읽기 / 36
● 책 읽기 / 37
● 책 읽기 / 38
● 책 읽기 / 39
● 책 읽기 / 40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클리어 비드

호출01.4e

우리네 아이들 94. 10월호

<통권 24호>

짜

임

세



<표지사진 설명>

아이들의 모습은
언제 보아도 한결같다.
저들의 웃음을 우리는
언제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
'어린이사랑방' 천사들의
모습을 이번 표지도 살린다.

- 일하며 생각하며 / 2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시작하며 정병호
- 기획1 / 5
메리 매킨토쉬 정책연구부
- 기획2 / 9
그림책과 어린이 오운정
<부록> 유아를 위한 동화분석 이주영
- 좋은 그림책 소개 / 21
- 긴급제안(2) / 23
어린이 폭력영상물 노출, 이대로는 안된다 문용린 외 2인
- 새날을 여는 사람들 / 35
현장과 이론의 만남을 위해 황미혜
- 특집1 / 39
현시기 영유아보육사업의 현실과 개선방향 서정은
- 특집2 / 47
영유아보육법중 개정법률안 * 민주자유당
<부록>민자당 중앙자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지탁연 외
- 모임과 모임 / 63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구로지역 환경을 살리는 어머니 모임
- 건강하게 삽시다 / 66
유·소아기의 피부발진 이흥진
- 글마당 / 68
딱아쇼별곡 일터아가들의 집
참새방앗간 최종열
우리들의 목소리 정은진
- 딱아계 풍향 / 74
- 소식과 소식 / 76
- 벼룩시장 / 79
- 편집부에서 / 80

■ 일하며 생각하며

공동육아 협동조합을 시작하며

정병호 / 신촌지역 공동육아 협동조합 「우리 어린이집」, 원장,
한양대 교수

우리 사회의 절실한 보육의 필요성은 도시빈민층(즉, 계급의 문제)에서 먼저 가시화 되었지만, 그 해결방식은 계급통합적인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보육제도의 마련을 통해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즉, 보육이 자선사업/복지사업으로 간주되는 한 이는 특수한 문제로 취급되고, 다양한 계층의 보편적 문제로 인식될 때보다는 부분적이고 관료적인 값싼 대용을 촉구하는 것에 머물게 되기 때문이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폭넓은 계층의 자발적 역량이 한데 힘을 합칠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고안된 것이 공동육아 협동조합 방식이다.

이 사회에 이미 공동육아에 대한 절실한 필요성이 있으므로, 자구적이고 자발적인 부모들의 힘을 모으면 스스로 재정적인 발판을 가진 압력집단이 만들어지리라 생각했다. 이들이 함께 만드는 공동육아의 터전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사회적 육아환경의 기준을 높이고 그곳에서 대안적 삶의 방식을 프로그램화하면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공동육아 모델이 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자발적 실험의 폭넓은 조직화가 바로 이 사회의 굳은 법과 제도와 관행을 바꿔나갈 수 있는 힘이 되리라 믿었다. 자선적, 관료적, 영리적 동기에 의해 남들이 만든 제도에 자기 몸을 맞출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공동육아의 터전을 만들고 서로의 기대와 가치관을 나누고 결충하며 함께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고자 한 것이다.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경험은 자체 재정의 확보방식과 운영의 합리성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주었고, 싱가포르의 육아 협동조합의 성공(전체 보육아동의 10%가 협동조합 방식의 어린이집에서 자람)은 협동조합 방식의 확산 가능성에 대한 신념을 주었다. 교사훈련, 프로그램 개발/공급, 조합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대안적인 삶의 방식의 프로그램화뿐만 아니라 외부의 간섭에 대해서 통제력(결정권)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은 아이들 뿐만 아니라, 이 일에 참여한 젊은 부모들까지 육아를 통해 공동체적인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익힐 수 있는, 아이들의 사회화와 어른들의 제사회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일이다. 이미 만들어진 기성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중시했기 때문에 처음에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제안만 있었을 뿐,

참여한 부모들이 조직형태에서 부터 정관, 교사채용, 장소선정, 출자금관리, 운영방법 등 모든 것을 각자의 직업에 따른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서로 분담해서 준비하고 토의를 통해 결정해 나갔다.

공동육아 협동조합의 첫 모델이 될 신촌지역 협동조합은 36가구의 조합원(48명의 아이)들이 낸 출자금(300만원씩:탈퇴시 돌려줌)으로 전세를 얻은 연남동 개인주택을 개조하여 9월초 개원하였다. 협동조합은 진보적 중산층 지식인들만의 자구적(따라서 사회적으로는 이기적인) 노력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부모의 소득과 재산에 따른 보육료의 차등제 수립이 초기부터 꼭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처음부터 장애아동과도 함께 생활하는 통합 보육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두가지 원칙이 어떻게, 얼마만큼 현실화되는가가 이 운동이 계층과 사회집단간의 이기적/차별적 육아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공동체적/통합적 육아방식을 만드는 일이 될 것인가 협동조합운동의 미래를 가름하는 일이 될 것이다.

공동육아는 공식적 교육이라기보다는 매일의 생활이라는 개념으로 출발할 것이다. 즉 때때로 삶의 즐거움을 느끼는 생활경험을 아이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즐거운 마음에서 호기심이 자라고, 자발적인 호기심으로 주변을 깊이있게 관찰하며, 관찰과 직접경험을 통해서 주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믿는다. 자연과 살아있는 사람과의 만남과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아이들은 배우고 자라나게 된다. 유토피아나 꿈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사람과 자연속에서 자연스레 살아갈 수 있는 일상적 삶의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의 도시공간 안에서는 자연을 끌어들이고, 자연을 찾아나가는 매일의 생활체험이 특히 필요할 것이다. 공동육아는 우리 아이들 한명, 한명이 고유한 개성을 가진 생명이라고 본다. 이러한 생명이 스스로 자라나는 것을 참고 기다릴줄 아는 어른이 되고자 노력한다. 우리 아이들은 움직임속에서 삶의 기쁨을 느끼고, 아픔을 알고, 웃음과 울음과 땀과 상처를 통해서 배우고 자라난다고 믿는 것이다. 어른들의 고정관념과 조급함은 이들의 호기심을 꺾고 관찰의 눈을 가리고, 자유로운 생각을 위축시킨다고 생각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이 스스로 자랄 수 있도록 바람직한 환경이란 밑거름을 북돋워줄 수 있을 뿐이다.

공동육아의 공간은 부모들에게 늘 열려 있어야 한다. 즉, 부모와 교사가 아이를 문턱에서 주고 받는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모든 어른들이 아이들과 함께 놀고, 또 놀고있는 아이들을 함께 지켜보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또한 아이와 어른간에 역할 분담은 있어도 상하위계가 없어야 한다. 따라서 판에 박은 역할과 몸짓의 인사말을 강요하지 않는다. 내용없는 스티커 붙인 출석부가 오고 가는 것으로 부모와의 교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곳의 생활 리듬과 범포는 어른이 아니라 아이들이 주도한다. 따라서 딱 짜여진 일과시간표가 없는 곳이다. 일제히 밥먹고, 일제히 잠자고, 일제히 같은 공부를 하고, 일제히 변소가 있는 집단의례의 생활화를 피한다. 무슨 활동이든지 단체로 하도록 강요하지 않는다. 즉, 개개인의 자발성, 호기심, 관심탐구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고자 애쓰는 공동생활의 터전을 만들고자 한다.

조치나 집단체조를 위해 줄서는 일이 없고, 큰 소리로 웃고, 떠들고, 싸워도 되는 곳.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활동(장보기, 밥짓기, 음식만들기, 설거지 하기, 쓸고, 닦고, 치우는 모든 가사일)이 아이들에게 열려있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라 직접 만든 음식과 간식을 주는 곳. 언제나 물장난, 흙장난을 할 수 있고 바람과 햇볕에 열려있는, 계절에 맞는 바깥 놀이가 매일의 생활이 되는 그런 곳을 만들고자 한다. 건물의 안팎이 모두 열린, 땀발로 흙을 밟을 수 있는 생활을 하며, 아이들을 울안에 가두지 않고 동네 빈 처와 야산과 쪽밭으로의 바깥 나들이가 바로 매일의 프로그램이 되는 그런 생활을 하고자 한다. 강아지와 고양이, 닭과 토끼, 자라와 개구리, 곤충이 함께 살고, 기성의 유아용 플라스틱 상품이 아니라 진짜 생활용품(그릇, 냄비, 수저, 손수레, 삽, 나무토막, 형겅)이 놀이감이 된다. 카세트 동화나 TV만화가 아니라 선생님이 직접 들려주는 살아있는(매일 조금씩 변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게그맨이나 가수의 흉내보다는 스스로 친숙해진 전통놀이(노래, 춤, 그림, 이야기)가 몸짓에 녹아있는 그런 생활을 하고 싶다.

획일적 교육방식을 배격하고 공동육아의 터전에서는 모든 것을 통합하는 교육경험을 하고자 한다. 학교수업처럼 어른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가르치거나, 나이를 학년처럼 나누어 각 방에 가두어 서로간의 접촉과 움직임을 제한하고, 학과목처럼 분리된 미술, 음악, 무용, 체육시간에 책상 곁상에 아이들을 못박아두고 칠판앞에서 선생만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런 구도를 배격한다. 모두가 똑같은 계복, 모자, 가방을 메고 와서 모두가 똑같은 기성품 교재, 놀이기구, 악기로 일제히 같은 시간에 같은 행동을 익히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남자와 여자를 놀이, 활동, 옷, 색깔로 구별하지 않겠다. 씨름하는 여자아이나 인형 놀이하는 남자아이를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양성적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은 교육을 할 것이다. 따라서 이곳에서는 "남자가 창피하게 왜 우니?"라든지 "여자애가 좀 다소곳해야지!" 따위의 이야기로 억압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장애를 가진 어린이와도 함께 생활하며 서로 이해하고 서로 돕는 생활을 익힐 수 있게 할 것이다. 어릴 때부터 장애를 가진 형제, 자매와의 생활을 경험함으로써 서로 다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다양한 사람과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미래의 세대를 키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육아의 특성상, 이 운동은 지역에 기반을 둔 지속적, 일상적 인간관계의 연계망이 필수적이다. 지역문화와 지역성의 토양이 얹어 인구의 유동성이 높은 우리 사회에서 공동육아란 그만큼 시작하기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 때문에 더욱 필요한 일이다. 공동육아 운동은 지금까지 지역과 유리된 곳에 진행되어 왔던 다양한 사회운동을 지역사회와의 일상적 삶속에 뿌리 내리게 하는 기능을 할 수 있다. 또한 이 운동의 성공은 지역사회와 주민자치의 필요성을 새롭게 가시화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

■ 기획1

메리 매킨토쉬 1)

나경선 / 정책연구부

* 이 글은 메리 매킨토쉬의 「국가와 여성억압」의 발췌문이다. 제1장에서는 논문의 주장을 개관적으로 소개하고, 제2장에서는 국가가 가족제도 유지를 위해서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그리고 제3장에서는 저자가 양육의 문제에 관하여 언급한 내용을 발췌하여 서술하였다. 마지막으로 매킨토쉬의 이러한 시각이 현재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아동보육의 문제에 어떤 시사점을 주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1. 메리 매킨토쉬가 「국가와 여성억압」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

메리 매킨토쉬가 논의하는 것은 여성억압과 남성에 대한 종속의 관계를 유지시키는 국가의 방법이다. 국가는 재생산의 사회적 조건을 유지시키기 위해 개입한다. 그는 국가의 개입이 초래되는 방식을 여성의 위치, 즉 가족과 임금노동에 대한 여성의 관계의 측면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있다. 매킨토쉬는 자신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핵심적인 문제는 국가의 정책에 의해서 뿐만 아니라 인간의본성, 관습, 종교 등의 이데올로기에 의해 구조화된 사회적 제도로서의 가족의 상대적 불변성"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국가는 오로지 재생산의 사회적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한다."는 것이다.

그의 「국가와 여성억압」이라는 글의 초점은 국가의 기능이 재생산 조건의 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며 그 분석은 국가가 주로 가족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해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 통제를 실시하는 방법을 고찰하는데서 출발하고 있다. 그런데 이는 가부장제의 개념을 넘어 국가와 국가가 그 안에서 재생산 조건의 생산과 재생산에 역할을 하는 자본주의 생산양식 사이의 관계의 개념으로 나아가면서 설명된다. 여기에서 국가와 노동과정과 가족제도 사이의 관계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것이 그의 주요 과제이다. 첫번째 관심은 가족의 유지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분석하는 것이다. 실제적인 노동력의 재생산을 출산율과 그에 따른 자녀의 양육과 같은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을

주) Mary McIntosh : SX대학의 사회학 강사이며, 동성애와 직업범죄를 연구하여 발표한 바 있다. 그녀는 여성의 법적, 경제적 독립을 위한 여성해방운동을 벌이고 있으며, 「Feminist Review」紙의 공동편집인으로 일을 하고 있다.

예증해준다. 국가개입의 구체적 형태는 특정한 복지 혜택의 할당을 통해 드러나며, 이는 가족제도가 "노동계급의 재생산의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 대처함으로써 가족 제도를 지탱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여성임금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관계라는 중요한 문제도 밝혀지며 여성의 노동력의 가치는 여성노동자의 재생산에 필요한 가치보다 낮다는 주장이 전개된다. 이 주장을 사용하여 탁아소의 설치와 출산수당 등의 창설(가정관리를 변화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의 노동력 수요를 변화시키는데 관련된)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한 국가개입의 성격을 설명한다. 그는 국가가 여성을 억압하는 역할을 함에 있어서 이를 직접적으로 행하지 않고 특수한 형태의 가족, 즉 대개 남성의 임금과 여성의 가내 봉사에 의존하는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이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2. 국가의 가족(노동력 재생산의 장)에의 개입

노동력의 재생산은 자본주의적 생산 그 자체의 외부에서 일어난다. 임금은 확실히 노동자 자신만의 재생산을 위한 것이며 비록 계급 전체로서의 재생산을 위한 임금의 중재가 상당한 정도로 가족기구를 통해 제공된다 해도 가족제도는 국가의 지원을 필요로 하며 그 지원을 받을 때조차도 그 과업에 적합하지 못해왔다. 국가는 노동력의 상품화를 확립하는데, 즉 생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노동력을 팔 수밖에 없는 프롤레타리아트를 창출하는데 막중한 역할을 해왔다.

국가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노동력의 규모와 구조를 상당한 정도까지 규정할 수 있다. 여성의 경우, 사회보장제도는 특이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한편으로는 기혼여성을 남편에 대한 의존자로서 확립하고(따라서 전적으로 임금노동에 의존하지 않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이 직접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여성이 임금노동을 해야 할 때 그들을 저임금 노동력으로 사용하기 쉽게 만든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재생산 개념은 여성을 억압하는 두가지 주요체제와 관련하여 뚜렷한 국가의 두가지 기능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한편으로는 국가는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해 특정한 형태의 가족체계를 유지시킨다. 이 가족체계에서는 그 구성원의 다수가 재정적 지원을 위해 소수의 성인(기본적으로 남성 소득자)의 임금에 의존하였으며, 구성원 모두가 세탁과 요리 등을 여성이 값싸게 행하는 부불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다른 한편 국가는 생산관계의 재생산을 위해(특히 노동력의 상품화를 유지하기 위해) 가족제도를 유지시킨다. 특히 직업을 갖지 않은 아내의 남편에 대한 재정적 의존을 확고하게 하여, 기혼여성으로 하여금 그들이 더욱더 많이 임금노동자화했던 기간에 있어서조차도 전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화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기혼여성을 잠재적 산업예비군으로 확립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3. 여성 혹은 가정의 양육의 책임

가족과 그에 따른 여성의 종속의 중요한 특징은 가정주부로서의 여성의 노동이다. 가정내의 사적인 소비를 위한 사용가치의 생산으로써의 가사는 거의 배타적으로 아내의 영역으로서, 가정내의 유일한 생산적 영역으로서 발전했다. 그것은 합리화되어가고 점점 더 많은 상품을 포함한다.

가족과 부모의 자식에 대한 애정, 특히 모성애라는 이데올로기에 대한 국가의 지지가 명확한 인구정책이나 부모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어린이들에게 수없이 일어나는 사고와 질병, 불구가 될 가능성, 돌보는데 필요한 상당시간, 사망 등은 가정에서 매우 많은 필요를 낳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에게 들어오는 임금이 변화하지는 않는다. 이러한 사고의 영향은 대부분 해당 가족에 한정된다. 돈을 버는 사람은 많되 피부양자가 적은 가정은 풍족하게 사는 반면 어린이가 많은 가정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 이러한 가난한 가정에서 특히 고생을 하는 것은 여성이다. 왜냐하면 보통 그들은 소비에 있어서는 자신을 몹쓸 희생하면서, 적은 양의 상품을 가지고 가능한 한 조금이라도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힘겹게 일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개의 경우 그들은 가족의 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일하러 가거나 '부업'을 갖는다.

그다지 큰 효과는 없지만 각 가정들 사이의 차이를 조정하는 작용을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있다. 이중에는 아동보호법, 영세가족지원법, 불구자연금법, 무료치료법, 일시적 질병과 실업에 대한 수당 등이 있다.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효과를 발휘한다면 임금체계가 노동계급의 재생산의 필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할 경우에 이를 보충함으로써 가족단위의 가정체계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곧 아내가 피부양자이면서 다른 가족성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되어있는 특정한 가족체계를 떠받치는 역할이 된다.

기술과 분업의 발달과 함께 사람들의 필요가 보다 다양해지고, 더 많은 보장을 요구하고, 지속적인 것으로 되었다. 따라서 노동력이 단지 단기간 동안 구입되는 임금체계를 통해서만 공급될 수 없는 집단적 형태의 소비(교육, 주택, 보건, 교통 등과 같은)가 점차 늘어난다. 이러한 집단적 소비는 가족과 매우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것은 흔히 가족 - 특히 어머니나 아내 - 에 의해 반드시 수행되어야만 할 필요들이 있다는 이데올로기를 수반한다. 이전에는 가정에서 수행되었으나 점차 국가가 떠맡게 된 기능이 갖는 이미지는 강력하다. 가정에서 분리된 정도가 각기 상이한 이들 기능은 현재 합변화의 과정에 있다. 즉, 어린이의 교육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입법화되어 있지만 어린이를 돌보는 일을 가정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은 입법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5세 미만의 어린이를 위한 설비는 국가적 형태인 보육원을 제외하면 대개 유치원이나 탁아소와 같은 사적인 형태를 띤다.

아동보호(입학 전이나 방학 기간 또는 어린이의 건강이 좋지 못한 경우)는 국가의 가족에 대한 개입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2차대전 이후로 결손가정이나 부적격한

가정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분리시켜 여러 기관들에 수용하려는 정책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 있었다. 또한 희석된 정신분석학적 이론을 이용하는 새로운 경향의 사회사업가와 사례연구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이 어린이들을 어머니의 집에서 살 수 있게 하고, 공인된 방법을 통해 어머니들을 설득시켜서 자식들을 책임지게끔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보호의 분담'-어린이와 다른 피부양자들을 사회기관과 가족이 분담하여 부양하는 것-이라는 개념이 최근에 사회정책집단들에 의해 논의되어왔으나 거의 실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때에 랜드와 파커의 다음과 같은 언급은 유의미하다. "..... 지금까지 국가는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아동보호의 책임을 떠맡거나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위기나 비극에 처할 때까지 스스로 그 문제에 대처하도록 내버려두는 경향이 있었다."

가족이 이러한 형태의보호를 해야 한다는 기존의 이데올로기가 존재하는 한 이러한 측면의 재생산이 가족단위의 가정을 통해서 조직될 가능성은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남게 된다. 가족은 언제나 그 피부양자들을 돌볼 준비를 완료하고 있다. 즉 낱자는 자기의 임금에서 보다 많이 지출하고 (때로는 보조금이 이 지출을 줄여준다) 여성은 실질적인 봉사에 있어서, 또한 마음에 있어서 또 하나의 짐을 지게 된다.

4. 평가

매킨토쉬의 「국가와 여성억압」은 아동보육의 문제가 국가의 가족제도에 의한 재생산 기제의 유지의 일부분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라는 기제를 통하여 여성이 거의 전적으로 부담하고 있는 양육이라는 문제에 어떻게 개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탁아소의 설치 뿐 아니라 육아휴가, 보육수당 등을 아동보육문제의 해결책으로 모색하고 있는 우리에게 그 해결책이 내포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탐색의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다.

즉, 아동의 보육은 독립된 별개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과 관련된 제반 보호(care)의 기능 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 문제이다. 마찬가지로 보육제도의 개선과 발전 역시 사회보장제도의 틀 안에서 관련 제도(보육수당, 육아휴직제, 육아보조금의 지급)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 기획

그림책과 어린이

오윤정 / 본 회 교육부장

지난 상반기 동안 서울경인지역, 지방아동분과회의에서는 어린이도서연구회 유아그림책 비평모임의 도움을 받아 여러 그림책을 보는 기회가 있었다.

여러가지 그림책을 보면서 "그림책이 참 재미있다.", "언어교육만을 위해서 그림책이 있는 것은 아니다." 등 여러 의견을 주고 받았다. 몇번의 이런 기회를 거치면서 그림책을 소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사가 좋은 그림책에 대해 알고 있어야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를 위해 '어린이와 그림책(샘터사)'을 보고 토론하였다(서울경인, 지방아동분과). 이의 결과를 지면을 통해 전 회원과 공유하고자 한다.

1. 그림책이란 무엇인가?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왜 보여줄까? 어릴 때부터 책과 친해져, 똑똑한 아이로 자라기 위해, 글자를 빨리 깨우치기 위해, 여러 지식을 얻기 위해 등등의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림책을 보는 가치는 좀더 다른 차원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글자를 읽는 것과는 다르다. 책의 내용을 이해하는 일이다. 그러므로 책을 읽는 데는 글자를 읽는 것과는 다른 능력이 필요하다.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이야기를 해줄 때 전혀 집중하지 못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열심히 듣는 아이가 있다. 열심히 듣는 아이는 선생님의 이야기 내용이 마음 속에 보이는 것이다. 그 아이의 눈은 선생님에게 가 있지만 사실은 마음속의 영상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는 능력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이야기의 세계를 자신의 마음 속에 영상으로 그려 볼 수 있는 힘이다. 이를 일반적으로 '상상력'이라 한다. 상상력이 풍부하면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 있다. 상상력 발달과 그림책은 크게 관련한다.

이런 상상력은 어린이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온 것은 아니다. 출생 후 여러가지 직, 간접의 체험을 통해 획득하며, 그림책은 유아에게 체험을 풍부하게 하는 기회를 준다. 앞서 말한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없는 유아도 그림책을 보면서 끝까지 들을 수 있다. 어린이는 그림책을 보면서 자신의 마음속에 영상을 그려간다.

아이들은 "옛날 옛날에..."로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이야기의 세계로 들어간다. "...

끝" 이후 아직까지도 아이는 이야기 속에 빨려들어가 여행하고 있다. 어른은 이때 일부러 아이를 깨워 질문을 퍼붓게 된다. "엄소가 어떻게 했지?", "뱀마리였더라?", "그래,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겠지!" 왜냐면 교사는 그림책을 통해 얻을 것이 아이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훈과 교육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책을 읽어주고 나면 일부러 질문을 퍼부을 필요가 없다. 아이가 그림책을 본 감동을 간직하도록 그냥 두고, 단지 자연스럽게 물어보면서 대화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림책에서 얻는 것 가운데 가장 먼저 생각할 일은 아이들의 상상력을 열어주고 아이에게 즐거움과 감동을 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그림책을 구성하는 요소- 글이 우선인가, 그림이 우선인가?

그림책은 그림과 글이 함께 있는 책이다.

어른들은 그림책을 펼치면 글자부터 본다. 그러나 어린이는 그림부터 본다.

어린이는 그림을 읽는다. 그렇기에 그림책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야기가 담겨진 그림이어야 한다. 글을 읽지 않고 그림만 보아도 이야기의 즐거움이 잘 읽혀져야 한다. 한면 한면의 그림은, 글의 내용, 주제, 세부를 충분히 반영하면서 읽어주는 글의 흐름과 자연스럽게 맞아야 한다. 그리고 그림이 한 화면에서 다음 화면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야 한다. 이 그림은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이어야 한다.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어떤 기법으로 그렸는가', 또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되는' 것이 아니다. 그림의 소재가 글의 내용과 맛을 충분히 반영한 것인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어린이의 창조력을 한껏 신장시키려면, 많은 것을 단편적으로 들여다보게 하는 것보다 하나의 아름다운 세계에서 자유분방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하나의 화면으로부터 다음의 화면으로 긴장과 연결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통일된 그림책이 필요하다. 앞표지부터 끝표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림책이 바람직하다.

그림책에 담긴 그림의 질에 따라 어린이가 머릿속에 그리는 영상의 질이 달라지므로 좋은 그림책을 어린이에게 주어야 한다.

글은 아이들의 세계를 반영하는 것이어야 한다. 아동문학은 현실의 세계와 공상의 세계가 공존해 있다. 어른들은 공상의 세계를 쉽게 잊어버린다. 공상의 세계는 아이들에게 상상의 세계이며, 이런 세계에 어린이가 가장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나이는 3,4세에서 10세 안팎이다. '구리와 구라'와 '괴물들이 사는 나라'는 이런 공상의 세계를 멋지게 그려낸 그림책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도깨비, 산신령은 아이들의 한 세계를 알려주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림책의 글은 어른의 발상이나 교훈이 아닌 어린이의 발상과 기분을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장난꾸러기 기관차 추추',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 '누가 내 머리에 똥쌌어?' 등의 책이 좋은 예이다.

어린이는 쓰여있는대로 충실히 읽는다. 어른들은 글을 읽으면서 책에 쓰여진 것 외에

자신의 다른 잣대를 가지고 글에 혹은 그림에 나타나지 않은 내용도 충분히 읽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알기 쉽게 쓰여져야 하고 재미있어야 한다. 어른들은 그림책을 선정하는 데 있어 강요된 교훈에 집착하는데 그것은 옳지 않다. 글은 아이들의 세계를 충분히 반영하고, 주제 역시 아이들의 입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

3. 그림책과 언어

유아는 여러가지 다양한 질의 언어를 체험한다. 첫째는 일상생활 속에서 아빠, 엄마, 선생님, 혹은 친구들과 얘기를 주고 받는 언어가 있다. 둘째로 텔레비전 언어가 있다. 셋째로 그림책이나 동화를 듣거나, 옛날 이야기를 들을 때의 언어가 있다. 세번째 언어는 앞의 첫째, 둘째 언어와는 달리 다분히 문학적인 질의 언어이다. 어느 언어나 모두 중요하지만 세번째의 문학적인 언어체험을 좀더 중요시할 필요가 있다.

문화적, 시적 언어체험이 풍부하거나 빈곤하다는 것은 유아기의 발달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 유아기에 이 언어 세계를 체험하지 못하면 상상력이나 이해력 발달이 극히 빈약해질 것이다. 특히 시적인 언어에서 체험하는 리듬, 느낌, 이미지의 연결, 즐거움, 쾌감 등은 언어의 음성적인 부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길러주며, 유아가 언어를 생생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발전하게 해 준다.

3~4세의 어린이에게는 특히 언어가 풍부한 그림책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되풀이 읽어주어야 한다. 3~4세경에는 세부적인 언어의 의미나 이해보다 언어의 재미나 즐거움 같은 감각적인 것을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

요즘의 어른들은 '이야기 하기'를 하지 않는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기 보다는 글과 문서로 대체하려 한다. 그러나 유아기의 아동은 대체로 책 내용이나 이야기를 귀로 듣게 된다. 다시 말해서 소리에 의해 언어를 획득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어린 유아들이 자장가를 듣거나, 동요를 노래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게 시를 좀더 많이 읽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뜻은 몰라도 언어의 즐거움, 리듬이나 소리의 재미를 맛보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림책을 선택할 때는 그 문장을 읽어 귀로 들어야 한다. 어린이들이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야 한다. 이런 경우 옛날 이야기가 좋다. 이때 이야기하는 어른이 그 이야기에 대한 풍부한 이미지를 가지고 우선 자신이 재미있어 하고 즐겁게 이야기하는 일이 중요하다.

이와같이 그림책은 아이들의 언어의 음성적인 부분에 대한 예민한 감각을 길러줌과 아울러 언어표현력, 즉 아이의 머릿속에 알고 있는 것, 느끼는 것, 생각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것이다.

4. 어른과 함께 읽는 그림책

좋은 그림책이 있다 하더라도 아이가 혼자서 보지만은 않는다. 이를 들려주는 어른, 사람이 필요하다. 이는 좋은 그림책의 요소만큼 중요하다.

우리는 그림책을 통해 아이와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관계는 또래와 언니 동생과의 관계에서도 가능하나, 어린 연령일수록 어른과의 관계가 더 많은 것은 사실이다. 어른과 아이의 관계형성은 이후 다른 사람과의 관계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금 당신이 2~3세 유아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려 한다면 어린이는 그림책 세계의 문 앞에 있는 것이다. 그때 어른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어린이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며, 이 아이가 얼마만큼 재미있어 하고, 좋아할 것인가에 대해 생각하는 일은 땀먼저 해야한다. 가르치고 싶은 어른의 기분을 제쳐두고 오로지 어린이가 그림책을 통해서 재미있어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를 생각하여야 한다. 그리고 순수하게 정성을 다해서 반복해서 읽고 어린이의 기분을 어른이 따라가는 것이다. 행여 앞질러가서 가르치려 하지 말아야 한다. 어린이가 스스로 '즐거움'을 맛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유아가 마음으로 부터 재미를 느끼면 반드시 말을 걸어온다. 그때 어른은 어린이의 기분을 따뜻하게 받아 주면서 응답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이 따뜻한 인간관계와 정성어린 말을 주고 받으면서 어린이는 만족감에 젖어 그림책의 언어나 그림을 마음깊이 새겨둔다. 동시에 그 그림책을 읽어준 어른의 인상도 강력하게 새겨둔다. 그리하여 그림책은 어린이의 내면세계를 풍요롭게 성장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림책은 사람이 들려주는 것이 좋다. 테이프등을 통해 들려주는 것은 차선의 방법이다.

5. 연령에 맞는 그림책

1) 영아를 위한 그림책

가장 어린 아이들의 그림책은 장난감으로서의 의미가 크므로 본래 의미의 그림책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아이 주변에 무엇인가 모양과 색이 있는 그림책이 있고, 이 새로운 사물에 주목하고, 몇초동안 지속해서 본다거나, 책을 보여주는 어른의 목소리에 여러 반응을 하기도 한다. 이때 어른은 그림을 보여주는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보여주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아이가 몸을 움직이게 되면 그림책을 만지고 뒤적거리게 된다. 이제 아이의 생활에 그림책이 살며시 들어간 것이다.

곧이어 아이의 성장에 한가지 혁명이 일어난다. 말을 시작하는 것이다. 알고 있는 사물과 사람을 언어, 말로 표현한다는 것은 이전의 아이가 표정과 몸짓으로 자신을 표현했던 것과는 다른 의사표현 방법을 터득하게 된 것이다. 또한 말은 여러 다른 행동을 만들어내고 상상력을 만들어내며, 아이의 생활을 더욱 바르게 한다. 이때 그림책은 아이의 관심을 받게 된다. 더 오랫동안 집중하게 되고 이제 보고싶은 그림책을 찾아오기도 하고

자기가 보고싶은 대목을 찾아 오랫동안 보기도 한다. 잘 아는 사물이 있는 그림책은 더 오래 지독하며 자신이 알고 있음을 표현한다. 이 시기의 아이들에게는 친숙한 물건, 음식, 탈 것이 그려진 사물그림책, 동물그림책, 디 부르너의 그림책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영아의 그림책은 안정감, 따뜻함이 있어야 한다. 안정감이 있다는 것은 어떤 색을 조화롭게 썼는가, 어떤 구도를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브루너의 그림책은 단순한 선, 화면구성, 색의 배합이 절묘하게 잘 조화됨으로 좋은 그림책으로 거론되는 것이다. 또한 동물그림책의 경우 세심하게 그린 그림책이어야 한다. 세심하다는 것은 있는 그대로 하나 하나 모두 그렸다는 것은 아니다. 생동감있게 살아있는 느낌이 나게 그려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하게 그렸다 하더라도 생명감이 있어야 한다. 이 동물그림책은 살아있는 것에 대한 느낌을 접하고, 생명에 대한 호기심은 이후 과학의 세계로 들어서게 되는 첫발을 내딛는 것이므로 쉽게 아이들에게 아무 책이나 주어서는 안된다.

사물그림책이 주를 이루는 이 시기의 책을 보여주는 어른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건 사과다. 따라해봐, 사과", "다음은 배..." 이런 식으로 그림책을 보여주기 쉽다. 좀 더 큰 아이들에게는 교훈과 지식을 넣어주는 것처럼 책을 보여준다면, 영아의 경우 그냥 한장 한장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기 쉽다. 이때 어른은 이 책을 통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어야 한다. 어른이 말,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들려줌으로 아이가 상상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다. 이렇게 책을 보아야 책의 참 재미를 느끼게 해주는 것이다.

사실 좋은 사물그림책을 찾기는 쉽다. 오히려 교사가 혹은 부모가 만들어주는 그림책도 생각해 볼만 하다. 신문에 끼워져서 오는 카타로그나 홍보물을 이용해서 그림책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아이에게 무엇을 보여줄지 어떻게 이야기해줄지 생각하면서 만든다면 시중에 나온 그림책보다 훨씬 세련되고 좋은 그림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이가 좀더 자라면 어른의 말을 더 많이 이해하고 아이끼리도 이야기가 통하게 된다. 이 시기는 호기심과 함께 상상력도 풍부해진다. 여러가지 물음이 꼬리를 물게 되며 어른에게는 이 물음이 귀찮게 조차 느껴지기도 한다. 그림책도 그림에 나타난 동작과 말을 따라하고 실제 생활과 연관시키기도 하는 등 이전 연령이 보였던 아이들의 행동보다 더 발전한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다음장에는 무엇이 나올까 예상도 하게 된다. 이제 사물그림책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활을 반영한 그림책이 아이에게 주어야 한다. 생활습관, 그 시기의 아이들이 갖는 감정을 반영한 그림책이 좋다. 그리고 구성에 있어 반복적이어야 한다. 아이가 넘어지면서도 걷고 또 걷고 하면서 아주 잘 걷게 되듯이 그림책도 반복적 구성이어야 한다. '안거스와 오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아이의 호기심을 반영하고 있고, '손이 나왔네'는 아이가 옷입을 때 겪게 되는 곤란과 해결했을 때의 기쁨을 잘 묘사했다. '엄마가 좋아'는 아이가 갖는 엄마에 대한 좋은 느낌을 잘 반영하고 있으며 각 장마다 똑같이 다른 동물의 엄마와 아이가 나와 반복적 구성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젠 아이와 어른이 서로 주고 받으며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

2> 3.4세를 위한 그림책

이 연령의 초기와 영아 연령의 말기는 구분이 불분명하다. 아이의 개인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므로 영아 말기에 제안했던 그림책은 3세 아이에게도 어울리는 그림책이다.

조금더 자란 아이는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에 자기 주장이 뚜렷해지고, 등장인물이 하는 행위의 의미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다. 이제는 스토리가 확실한 그림책의 맛을 알게된다. 이전의 그림책이 한장 한장 단절적인 부분이 있었다면 이 시기의 아이에게는 처음부터 끝까지 읽게 되는 그림책이 흥미를 준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아직 기승전결의 형태를 확실히 띤 그림책보다는 기승전결의 구성을 갖되 여전히 반복적 구성을 가지고 있어 아이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그림책이 좋다. '누가 내머리에 똥쌌어?'는 아이가 좋아하는 '똥'의 소재와 똥을싼 주인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반복구성을 아이를 그림책에 몰입하게 만든다. 그리고 글도 리듬감을 가지면서 반복되는 말을 쓰면서 구성과 합치되어 아이가 책을 보고난 이후도 리듬감 있는 말을 자기 놀이에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이 시기에는 옛날 이야기 그림책이 아이에게 사랑을 받는다. 옛날 이야기가 갖는 반복적인 행동의 연속(등장인물의 행동이 반복적이든, 같은 행동을 다른 등장인물이 반복하든)과 아이가 해결사가 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물이 주인공이 되는등 아이를 끌어들이는 좋은 요소들을 가지고 있다. '장갑'이 그 좋은 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나라 전래동화가 그림책으로 많이 나와있는데 글의 맛을 그림의 조잡함과 무성의로 제대로 실어내지 못해 차라리 어른이 그냥 들려주는 것이 더 좋다는 점이다. 어린이집에서는 낮잠 시간에 그냥 들려주는 것이 좋을듯하다. '심부름'도 아이들에게 사랑받는 그림책이다.

이제 아이들의 호기심과 상상력을 자극하는 그림책이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한다.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해결하고, '아이답다'라고 이야기하는 천진함과 아이의 세계가 이 시기에는 특히 현실과 공상을 자주 넘나든다. 도깨비는 상상의 인물이다. 이 도깨비를 통해 아이는 자기가 갖는 공상의 세계를 현실로 끄집어내기도 하고, 공상의 세계를 넓혀가기도 한다. '도깨비를 빨아버린 우리 엄마'는 엄마라는,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대상을 소재로 함과 아울러 도깨비의 등장과 행동은 아이를 흥분하게 만들 정도이다. 이제 아이가 문학의 세계에서 헤엄치는 것 같다.

3> 5.6세를 위한 그림책

이 시기가 되면 어른이 아이의 행동, 놀이를 막기란 쉽지가 않다. 그만큼 어른에게 독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놀이도 또래끼리 하고 간혹 어른을 자기들 놀이에서 따돌리기도 한다. 또한 상상력과 언어 이해력이 상당히 높아지고, 그림책을 이해하는 폭과 깊이가 늘어난다. 글을 이해하는 깊이에 따라 글이 주는 감동과 회노애탁을 더욱 깊이 알게 된다.

그림책의 주제도 다양하고, 깊이가 생기며, 문학으로서의 의미도 커진다.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이제는 이야기골, 기승전결을 갖춘 그림책을 쉽게 소화할 수 있으며, 꽤 긴 분량의 그림책을 볼 수 있게 된다. 또 아이가 즐겨보는 그림책이 생겨서 한 그림책에 폭

빠지기도 한다. '토끼가족이야기', '작은집이야기' 등이 그런 예이다.

이 시기의 그림책은 앞서 이야기한 좋은 그림책의 내용이 충분히 담긴 것을 주어야 한다.

아이들이 그림책을 만들어보는 것도 좋은 그림책을 갖게 하는 방법중의 하나이다. 아이들과, 혹은 한 아이와 어떤 내용으로 그림책을 만들 것인지 상의하여 함께 만든다면, 그리고 그것을 어린 동생 혹은 또래들에게 보여주고 들려준다면 아이에게 큰 의미의 그림책이 될 수 있다.

연령에 따라 그림책을 선정하는 것은 어른들이 편의에 따른 기준이라 할 수도 있다. 어린 영아에게 5.6세 아이의 그림책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기준이 아니다. 어린 아이들에게도 어른이 어떻게 들려주느냐에 따라 흥미와 반응, 관심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큰 아이가 영아 그림책을 좋아한다고 해서 발달이 떨어진다고 볼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 그림책이 그 아이가 아주 좋아하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림책에 끌려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령의 구분을 넘나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아이의 성장에 따라 그림책을 받아들이는 감정과 깊이는 다르며, 똑같은 그림책을 보고도 아이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강요해서는 안된다.

한가지 그림책의 경우에도 그림책 한장 한장 넘기는 속도와 관심을 갖는 장면이 다를 수 있다. 그러므로 그림책은 혼자서 감상하고, 어른이 들려주는 시간이 필요하다.

6. 그림책외의 동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실제 어린이집에서는 그림책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방식으로 동화를 들려주고 있다. 동화를 들려주다보면 교사 스스로도 억지이다 싶은 내용의 동화가 많고, 큰 그림동화의 경우 그림이 조잡하여 답답할 때가 있다. 동화를 선택하는 기준은 위의 자료, 이주영씨의 글을 참고하는 것으로 하되, 몇가지 우리의 교육원칙에 준하여 제시한다면 주제나 내용에 있어 아이의 입장에서 고려된것, 공동체 지향의 성격을 갖는 내용, 민족주체성의 글과 내용, 성차별을 극복하는 내용, 극단적인 교훈성에 치우쳐서는 안되는 것, 자연사랑, 평화지향 등이 있겠다.

7. 그림책과 교육

앞서 그림책을 살펴보면 아이들에게 좋은 그림책이란 가장 교육적인 것과 일맥상통함을 발견할 것이다. 아이의 입장에서 그리고 쓴 그림책이 좋은 그림책이고, 아이의 성장에 기초한 그림책의 형식과 구성, 그때 그때 나이에 맞는 주제와 내용의 선정이 좋은 그림책이며, 이는 아이를 주체로 하는 교육의 구체적 내용인 것이다. 한가지 작은 범주인 그림책을 살펴보면 우리가 갖는 아동관과 교육철학을 다시 한번 살피고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8. 교사들의 과제

교사의 전문성과 교육내용의 확보는 각각의 교육이론을 폭넓게 이해하는 것으로 해결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교육활동에서 확보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전 우리의 교육사업이 교육관, 교육목표, 교사의 역할을 정리하는 과정이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교육활동에서 관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의 한 시도로써 그림책에 대해 공부하는 교사들의 소모임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 모임에서 좋은 그림책을 선정하고,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정리하는 작업을 한다면 현재 어린이집에서의 그림책을 통한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부록>

유아를 위한 동화분석

이주영 / 어린이 도서연구회 부회장

1. 분석 자료

영, 유아 보육프로그램 실무 1.2.3권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집필. 삼성복지재단. 1992년 12월 발행

이 책은 놀이방 교사들을 위한 지도계획서로 0세~5세 어린이가 대상이다. 2-3세에게 읽어줄 동화 28편, 4-5세에게 읽어줄 동화 41편, 공통으로 읽어줄 동화 49편이 실려 있다.

2. 분석 기준

- 자연 생명을 존중하는가?
- 민주주의 생활태도를 길러주는가?
- 민족 정서를 담았는가?
- 동화구성요소를 갖추고 있는가?
- 문장, 맞춤법이 바른가? 깨끗한 우리말을 쓰는가?
- 대상 연령 분류가 타당한가?

3. 분석 결과

118편 가운데 60편은 '좋다' 또는 '이 정도면 괜찮겠다', 58편은 '별 의미가 없다' 또는 '좋지 않다'고 보았다. 평소 비평 기준보다 상당히 부드러운 마음으로 보았는데도 50%는 유아에게 들려줄 필요가 없는 동화, 들려주면 정서교육에 해가 될 수 있는 동화다.

읽어줘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60편이 두세 편을 빼고는 다른 나라 또는 국적 불명이어서 아쉬웠다. 유아를 위해 읽어주라고 권장할 수 없는 58편은 대개 교훈성에 치우쳐

어른 생각을 억지로 주입하려는 의도가 거칠게 드러나 있는 이야기들이다.

(1) 어린이를 협박하는 이야기(교육성에 치우쳐서)

어린이 생활 태도를 고치고 싶은 교훈성에 치우쳐 예사로 어린이를 협박하는 동화가 의외로 많았다. '잘 먹지 않는 아이(2~3세)'를 보자.

어린이의 창조력을 한껏 신장시키려면, 많은 것을 단편적으로 들여다보게 하는 것보다 하나의 아름다운 세계에서 자유분방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상상하게 하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하나의 화면으로부터 다음의 화면으로 긴장과 연결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통일된 그림책이 필요하다. 앞표지부터 끝표지에 이르기까지 하나의 세계가 펼쳐지는 그림책이 바람직하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잘 먹지 않는 아이가 있다. 어머니의 애원과 협박 - 너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니? 무력무력 자라는 대신 조그맣게 줄어든단다. - 을 끝이 들으려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 협박이 진자가 되어 아이가 줄어들었다. 콩알만큼 조그맣게 된 주인공이 죽을 고비를 넘기다 개밥- 고기와 밥-을 밥알 하나 안 남기고 싹싹 먹고서야 다시 커진다. 그 날 이후 부터는 엄마가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모두 맛있게 먹었다는 이야기다.

몇 가지 사건으로 재미를 살렸지만 그 속에서 가시가 들어있다. 상상의 세계와 현실 세계를 구별할 수 없는 유아, 주인공과 자신을 구별할 수 없는 유아들에게는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협박이 가시가 되어 마음에 상처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어린이에게 '~~ 안 하면 죽어, ~~하면 가만 안 들 거야, ~~너하고 다시는 안 놀아 줄 거야.' 같은 협박이 비교육적임은 이미 많은 교육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이처럼 교훈에 치우쳐 유아들을 협박하는 유형의 동화는 삼가는 것이 좋겠다.

(2) 놀이를 빼앗으려는 음모가 담긴 이야기

놀이는 어린이에게는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많은 어른들이 어린이들로부터 놀이를 빼앗으려는 음모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이러한 어른들의 마음을 잘 보여주는 동화가 '작은 배 부부(2~3세)'다.

작은 배 부부는 부두 예인선이다. 그런데 일하지 않고 구석에 가서 놀기만 한다. 놀다가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혼자 떠돌다가 바다 가운데로 간다. 파도에 겹을 먹고 구조 요청을 했지만 다른 예인선이 파도 때문에 오지 못한다. 그때 마침 부두로 들어오는 큰 배가 있어 그 배를 끌고 들어 와 모든 예인선에게 환호를 받고, 그 다음부터 일을 잘 한다는 동화다.

많은 동화가 이런 유형이다. 곧 말쑥꾸러기가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한 일을 당하고서야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다. 물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 일을 교훈으로 생활 태도를 바꾸는 것이 그렇지 않은 것보다 낫지만 이렇게 상투적인 내용을 계속 들으며 자란 아이들이 어떤 정서를 갖게 될 것인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루소'가 '에밀'에서 '에밀'에게 우화를 들려주지 않겠다. 어린이들은 우화에서 어른들이 바라는 것과는 다른 것을

더 많이 배운다'면서 '여우와 까마귀'를 예로 들었다. 곧 어른들은 이 우화를 읽고 어린이들이 남을 속이지 않기를 바라지만 어린이들은 이 우화를 읽고, 여우가 되기를 결심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어린이들이 위험을 당하기 전에 잘못된 생활 태도를 고치겠다는 생각보다 아직은 위험하지 않으니까 마음놓고 말쑥꾸러기로 남아있어도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좀 나쁜 짓을 해도 언제든지 회개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면 굳이 일찍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궤변과 같다.

그러나 이 동화가 보여주는 더 큰 문제는 어린이들로부터 '놀이'를 빼앗으려는 어른들의 음모성이 엿보인다는 점이다. '놀이'를 '일'과 분리하여 '놀이'는 나쁘고 '일'은 좋다는 개념을 형성시키고 있다. 어린이에게 '놀이'와 '일'은 나뉘질 수 없다는 것이다. 곧 '놀이'가 일이고 '일'이 놀이다. 어린이들은 놀이를 하면서 자라는 것이다. 사실 어른들에게도 '일'이 '놀이'와 하나로 인식될 때 '노동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당하는 현대인의 비극성'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에게 있어 '놀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다. 재미처럼 일하기만을 바라는 어른들은 재미처럼 일하려면 재미처럼 놀아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사람들은 재미를 하루종일 일만 하는 곤충으로 알고 있다. 이는 우화로 각인당한 생각일 뿐이다.

'곤충학자들이 조사해 보니, 재미는 하루 중에 3분의 2는 윈다고 합니다. 곤충학자가 재미가 노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해 조그만 상자에 넣어 놀지 못하게 했더니 집을 찾아오는 기능을 잃어버리더랍니다(노동자 글모음2, 49쪽에서 발췌).'

재미처럼 일하려면 재미처럼 놀아야 하는데 이처럼 '놀이'와 '일'을 '악과 선'으로 대비시켜 '놀이'를 빼앗으려는 음모가 성공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참으로 삭막하고, 파멸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3) 목표와 다른 이야기

동화 감상의 목표와 다른 이야기가 있다. '혼자 할 수 있어요'를 보자.

이 동화를 감상하는 까닭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스스로 하기' 목표를 위해서다.

토돌이가 아빠와 놀이터에 가서 미끄럼틀 계단을 올라가지 못해 아빠의 도움을 받는다. 다음에 그네를 타면서 밀어달라고 한다. 끝으로 아주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아빠가 사 주면서 '토돌아, 아빠가 도와줄까?'하니, '아니요, 혼자서도 다 먹을 수 있어요.'한다.

도대체 무엇을 혼자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야기 줄거리로 보면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혼자 먹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2~3세 어린이에게 아이스크림을 혼자 다 먹을 수 있다는 것을 강화해야 할 까닭이 어디에 있을까?

(4) 일어, 영어 문장을 직역한 이야기

맞춤법과 문장이 틀린 경우가 자주 보여 안타까웠다. 맞춤법이 틀린 것은 편집부 실수라 하고, 지도교사가 고쳐서 읽어 줄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일어, 영어 문장을 직

역한 것은 지도교사들이 쉽게 고쳐 입을 수 없다. 이런 문장을 유아들에게 그대로 읽어 줘서는 안 된다. '꼬마 우편 비행기'에서 몇 문장만 살펴보자.

- * 나의 집은~, 나의 눈에~ : 우리 집은~, 내 눈에~
- * 산들을 무섭고 험했습니다: 산이 험하고 무서웠습니다.

(5) 민족정서가 없는 이야기

국적 불명의 동화가 많다. 우리나라 작가, 주인공이 우리나라 어린이 이름인데도 그 내용을 보면 외국 동화라는 느낌이 든다. '그네 좀 태워줘'도 작자가 '남미영'인데 전형적인 일본 동화 냄새가 난다.

또한 불필요하게 외국말이 많이 들어 있다. 카드, 핫케이크, 프라이팬, 버터, 스웨터, 팬지, 초콜릿, 스톱, 파이, 잼, 소시지, 에스컬레이트, 로봇, 스프 등이다. 몇편 읽다가 이런 영어가 많이 눈에 거슬려 써 보았더니 음식 이름이 대부분이었다. 이런 말이 생활에서 쓰인다고 하더라도 유아를 위한 동화에 생각없이 마구 써서는 안되겠다. 그러고 보니 '밥' 이외에는 우리 음식 이름을 읽은 기억이 없다. 김치, 된장찌개, 깍두기, 사과, 배, 대추, 감, 밥, 봉숭아, 고추장, 된장, 간장, 빈대떡, 인절미... 같은 우리 음식 이름이 안 보인다. 이런 동화를 읽어주면서 어떻게 민족 정서를 가꿀 수 있을까?

유아시기에 우리 옛 이야기를 들려 주는 일은 참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 전래 동화는 불과 5~6편에 불과하다. 그나마 개작을 잘못해서 맛을 잃어버렸다.

대부분 동화에 작자, 국적, 출처를 밝히지 않은 것도 문제다. 불과 10편 정도에 작자를 표기하였다. 아주 잘못된 태도, 불성실한 권위주의라고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

출처: 공동육아연구회 영유아프로그램 분석자료(1993년 12월)

좋은 그림책 소개

이런이 특한 음식과 동물, 생대로는 안된다

손이 나왔네

글, 그림 하야시 아키코 / 한림출판사 / 2,500원

곰지락 곰지락 손이 나왔네...

어린 아이가 혼자 옷을 입어보려 애쓰는 모습을 그린 생활그림책이다.

각 장마다 옷을 입는 장면에서 차례차례 나오는 손, 발, 머리 등의 각 신체부의 이름을 익힐 수 있으며, 그림책을 넘기면서 서서히 글의 전개와 절정을 맛볼 수 있다. 발을 나오게 하려 애쓰는 모습이 이 그림책의 절정이다.

이제 혼자 해보려는 마음이 생긴 어린 유아의 행동과 마음을 잘 묘사한 책이다.

영아들을 위한 생활동화이다.

(2세이상)



좋은 그림책 소개

곰사냥을 떠나자

그림 헬렌 옥슨비리 / 글 마이클 로젠 / 공경희 옮김 / 시공사 / 6,000원

곰을 잡으로 간단다 / 큰 곰 잡으러 간단다.
어라! 풀밭이잖아 / 넘실대는 기다란 풀잎
아, 아니지 풀밭을 헤치고 지나가면 되잖아!
사각 서걱! 사각 서걱! 사각 서걱!

첫장을 넘기면 곰 잡으러 나선 아이들의 즐거운 모습, 가는 길에서 만난 풀밭을 어떻게 지나갈까 고심하다가 그냥 헤치고 지나가기로 하는데, 뒷장 그림을 넘기면 큰 화면 가득히 넓은 풀밭과 지나가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리고 어떤 설명의 글도 없이 오직 사각 서걱이라는 지나가는 소리만 적혀있다.

덤벙덤벙 건너는 강물, 처벽철퍽 지나는 진흙탕, 바스락 부르럭 하며 숲을 뚫고 지나가, 곰이 있는 굴 속으로 들어간다. 으악 곰이잖아! 왔던 길로 쫓아오는 곰을 피해 집으로 도망와 문을 잠그고 침대 이불 밑으로 들어간다. 다시는 곰 잡으러 가지 않을테야...

이 그림책은 리듬감있는 문장으로 아이들과 교사가 서로 주고 받으며 읽을 수 있는 좋은 장점을 지니고 있다. 또 자연을 잃어버린 아이들에게 풀밭을 정말 걸어가고, 진흙탕을 지나는 느낌을 충분히 전달해주며, 실제 해보고 싶은 충동을 불러 일으킨다.

천천히 곰을 잡으러 가는 모습을 그리다가 무섭지 않다던 곰을 만나는 순간 부리나케 도망쳐오는 모습을 속도감있게 묘사하고 마무리에서 이불속으로 쑥 숨어버림으로 안도감을 독자로 하여금 느끼게 한다.

(4세이상)



■ 긴급진단(2)

어린이 폭력 영상물 노출, 이대로는 안된다

문용린 /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

1. 어수선한 세상 : 메스컴의 역할

지난달 9월은 유난히도 어수선한 달이었다. 지존파의 겹거소식과 그들의 비인간적이고 혐기적 범죄 행각이 추석의 고즈넉한 분위기를 일시에 깨뜨려 놓더니, 온보현의 지극히 맹목적이고 잔인한 여성중요의 살인행각은 "정말로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하는 절망감마저 느끼게 했다.

많은 진단이 내려졌다. 범인들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그 속에서 길러진 메마른 정서, 황폐한 가치관, 모자르는 학력 등이 그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르게끔 유도했다는 것이다. 어느 진단 하나가 옳고, 다른 하나는 틀리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복합적 원인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에 한결같이 따라 붙는 또 하나의 진단이 있다. 메스컴이 이런 범죄 발생과 연관하다는 것이다. 흉악범에 대한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그들의 범죄행각에 대한 변명이 여과없이 TV, 라디오, 신문지상에 노출됨으로써 범인들과 비슷한 정서를 가진 예비 비행자들의 범죄행위에 대한 정당화의 논리구조를 강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범인들이 사용한 자세한 범죄수법이 공개됨으로써, 더욱 범죄실행의 가능성을 높여 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런 범죄가 "있을 수도 있는 일"이라는 범죄행동에 대한 허용성의 폭이 커져서, 범죄행동에 보다 쉽게 착수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메스컴의 범죄유도 가능성은 범죄 사건에 대한 보도 그 자체만으로도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폭력사건에 대한 메스컴의 보도가 폭력 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주장인 셈이다.

그러나 범죄사건에 대한 생생한, 여과되지 않은 보도, 그러나 단지 몇분에 지나지 않는 짧은 보도가 그런 범죄유발 가능성을 높여준다고 하면, TV, 비디오, 또는 영화관에서 짧게는 몇십분에서 길게는 몇시간씩 보여주며, 그것도 시리즈물로 몇주, 몇달에 걸쳐서 보여주게 되는 영상폭력물은 과연 폭력범죄유발에 어떤 효과를 미칠 것인가?

이것이 오늘의 토론 주제이다.

제목에서 보이듯, 이 글은 어린이와 폭력 영상물에 국한된 논의를 펼치고자 하며, 그것도 주로 텔레비전, 비디오의 만화 영화에 관련된 범위내에서 언급하고자 한다.

2. 폭력 영상물, 범죄를 부추기는가?

폭력 영상물이 정말로 그것을 시청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에 대한 욕구와 행동을 부추기는 것일까?

197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보건 당국은 이런 TV 영상폭력물의 위해 논쟁에 중지부를 찍겠다는 욕심으로 대대적인 연구를 시작한다. 그런 연구의 결과로 대체로 세가지 이론이 대두되었다.

하나는 모방이론(Modeling Theory)이라 불리는 것으로 A. Bandura가 그 주창자이다. 폭력영상물은 시청자로 하여금 범죄와 공격행동의 모방을 촉진시키며, 그렇게 잠재된 모방은 그들로 하여금 필요한 단서가 제공될 경우, 공격과 범죄행동을 하게끔 유도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점화이론(Instigation)이라는 것으로 Berkowitz가 주장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폭력영상물이 단지 모방능력을 잠재화시킬 뿐 아니라, 시청자들로 하여금 범죄와 공격에 대한 정서적 동조성과 준비성을 야기시켜서, 비교적 즉각적인 공격반응을 유도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모방이론보다 더 강력하게 폭력영상물의 영향력을 강조하는 것이다. 예컨대 '사건25시'나 '경찰청사람들' 혹은 폭력사건에 대한 상세한 보도가 나간 후 유사한 범죄가 급증하는 이유는 이런 Berkowitz의 점화이론으로 잘 설명된다.

세째 이론은 정화이론(Catharsis Hypothesis)이라 불리우는 것으로 사람들 속에 내재된 공격욕구나 범죄욕구가 폭력 영상물의 시청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발산되므로, 오히려 범죄행동이나 공격행동을 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이론이다. Feshbach와 Singer가 이 이론의 주창자이나, 특별히 공격욕이 높은 사람에게는 부분적으로 옳은 해석이지만, 보편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며, 특히 어린이(14세 이하)들에게는 이런 정화이론은 설명력이 낮다는 지적을 많이 받는다(A. Siegel이 그 대표임).

오늘날의 전반적인 연구 결론은 모방이론과 정화이론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하면서, 보다 정교하게 원인을 찾아가는 방향이다. 즉 영상폭력물이 공격행동의 가능성과 표출을 높이는 것이 틀림없어 보인다. 다만 사람에 따라 그 영향 정도가 다르고, 영상물의 제시 방식과 내용에 따라 그 영향 정도가 다른데, 그 까닭이 무엇일까에 연구가 쏠리고 있다.

많은 연구중에서 "어린이 폭력영상물의 영향력"에 대한 설명과 관련된 것 두가지만 살펴보겠다.

1) 어릴적의 영상폭력물 시청이 성장후의 공격성향에 영향을 주는가?

이런 의문과 관련해서 Eron이라는 미국의 교육심리학자가 중요한 실험을 수행한 바 있다. 9세차리 국민학생 875명을 대상으로 ① TV 영상폭력물 시청량, ② 공격적 행동의 빈도를 조사하고, 그 상관계수를 냈더니 상당히 의미있게 높았다. 즉 폭력적 TV프로그램을 많이 본 남자아이일수록 일상생활에서 공격행동의 빈도가 높았다. 여자에게는 이런

경향이 없었다. 10년후 즉 이러한 9세차리가 19살이 되었을 때 그중 460명을 찾아내어 ① TV 폭력물 시청량, ② 공격적 행동의 빈도를 다시 조사했다. 첫째, 19세에서도, TV 폭력물을 많이 보는 남자일수록 공격행동의 빈도가 높았다. 둘째, 9살에 TV폭력물을 많이 본 어린이가 19세가 되었을 때에도 여전히 공격행동의 빈도가 높았다. ($r=31$) 이 연구는 결국 어릴 때의 폭력영상물 시청이 큰 후의 공격성향에 영향을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2) 어린이들은 TV 폭력물을 얼마나 "진짜"인 것처럼 인지하는가?

드라마나 영화의 폭력을 가상인 것으로 받아들일수록, 즉 TV 폭력영화 속의 상황을 현실과 구분해서 받아들일수록, 그 영향력은 줄어들 수 있다. 슈퍼맨이 하늘을 나는 것을 "불가능한 일이지만, 재미를 위해서 꾸며낸 가상적 상황"이라고 받아들이는 어린이는 몸소 지붕위에서 슈퍼맨 흉내를 내며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진짜"로 받아들이는 어린이는 나무 위에서 슈퍼맨 흉내를 내며 떨어진다. 그러다 죽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다.

TV 폭력물에 대해서는 어떨까? 사람을 죽이고, 잔인하게 죽는 상황을 "진짜"로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 지존파를 보며 가졌던 공포와 두려움이 어떻게 영화속에서 사람 죽이는 이야기와 그 강도가 같을까? 이것은 어른 이야기이다. 어린이는 영화속의 폭력과 살인이 실제 속에서 벌어지는 폭력과 살인처럼 느껴진다. 실제로 있어서 그것에 대한 구분은 명확하지 않다. 그들은 영화를 진짜 현실처럼 느낀다. 그렇기 때문에 TV 폭력물의 영향력은 더욱 크다.

Lyle와 Hoffman이 어린이들의 이런 "진짜"감각을 연구했다.

① 7살 아동의 50%는 TV영화속의 상황을 현실속의 상황과 동일시했다.

② 13세, 17세들은 두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인지하는 사람이 많기는 했으나 여전히 동일시 하는 경향도 높았다. 즉 상황은 다르지만 그 상황속의 인물은 현실속에 그대로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

③ 이렇게 "진짜"로 믿는 경향은 사회경제적으로 낮은 계층의 어린이일수록 강했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무엇을 뜻하는가? 어린이들이 TV폭력물에 더 영향을 받는 이유가 되지 않을까? 어린이와 어른은 폭력영상물로부터 서로 상이한 영향력을 받는다는 증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TV 폭력영상물이 특히 어린이들의 폭력성과 공격성을 부추킨다는 주장은 이제 의심하기 어려운 명제로 받아들여져야 할 것 같다.

이런 전제를 받아들인다고 할 때,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상당히 위험스럽다. 어린이들이 무차별적으로 폭력 영상물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런 경향은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19세"를 끊임없이 양성시킬 것이 틀림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3. 폭력 영상물에 방치되어 있는 우리 어린이들

1) 얼마나 보고 있나?

서울YMCA <건전 비디오 문화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의 '94년 여름방학 어린이들의 비디오 시청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여름방학동안 어린이들의 평균 비디오 시청편수는 6.3편이었으며, 20편 이상을 보았다는 중시청자들도 6.7%나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얼마나 보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것을 보았느냐가 더 중요하다.

어린이들이 많이 본 만화비디오 10위를 보면 <알라딘>, <인어공주>를 제외하고는 <슬램덩크>, <후레쉬맨>, <란마1/2>, <드래곤볼> 등 그동안 폭력적 내용으로 시민단체로부터 지적받아온 일본만화가 대부분이다. 2,3년 전에 출시된 비디오들이 여전히 어린이들에게 인기리에 시청되고 있음은 비디오의 특성인 반복 시청에 의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실감케 한다. 이들 일본 만화비디오들은 적게는 10편에서 많게는 68편에 이르는 시리즈물이라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에서는 수입이 금지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한 폭력이 문제가 되는 홍콩물 역시 어린이들이 많이 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위 10편의 비디오를 보면, <황비홍>, <백발마녀전> 등은 SF무협물이고, <지존무상>, <도성>은 도박과 폭력을 소재로 한 영화이고, <시티헌터>는 어린이들에게 인기있는 '성룡' 주연의 경찰영화이고, <스트리트 파이팅>은 이미 일본에서 제작된 전자게임 '스트리트 파이터'를 모방한 조악한 품질의 폭력물이다. 이들 비디오는 모두, '고등학교이상 관람가', '연소자관람불가'로 어린이들이 볼 수 없는 등급임에도 어린이들에게 가장 많이 본 비디오 목록에 들어있다는 사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들이 많이 본 외국영화의 경우도 모두 미국 헐리웃영화 일색으로 <베토벤1,2>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폭력영화이다. 제작국인 미국에서조차 심각한 폭력성으로 17세이하의 청소년들에게는 시청이 규제되고 있는 R급 영화 <로보캅>, <데몰리션맨> 등이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이처럼 폭넓게 보여지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우기 영국에서 어린이의 모방살인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탄의 인형>은 1편이 '고등학교생 관람가', 2,3편이 '연소자관람불가'의 등급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린이들이 본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폭력 영상물에 노출되고 있는 정도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등급심의가 '고등학교생가', '연소자불가'로 되었다 하더라도, 폭력물이나 공포물은 어린이, 청소년용이라는 우리 사회의 인식이 비디오 대역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더구나 이들 비디오를 시청함에 있어 어린이들의 65.7%가 형제자매와 함께, 혹은 친구와 함께 보았다고 답해 비디오 시청이 부모들의 지도없이 어린이들끼리 이루어지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이는 46.5%의 어린이가 자신이 직접 비디오가게에 가서 빌려본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2) 최근 어린이 만화영화에서 보여지는 폭력의 유형과 문제점

(1) 만화영화의 장르별 구분 없이 거의 모든 어린이 만화영화에서 범죄, 형무소, 악당, 경찰과 형사 등 범죄와 관련된 등장인물과 공간적 배경이 삽입되거나 중요한 장치로 설정되어 있다. 총, 칼, 도끼, 폭탄, 각종 레이저 무기, 로봇 등 원시무기에서 첨단무기까지 살상용 무기들이 빠짐없이 보여진다. 특히 코믹만화에서는 총기, 무기 등이 일상생활의 에피소드에서 과장된 폭력을 보여주는 데 이용되고 있다.

(2) 특별히 잔인한 살상장면 보다는 시리즈 전체에서 폭력의 정당화와 보다 많은 폭력을 즐기기 위한 이야기 구도가 반복적으로 전개되어 부분장면의 폭력성보다 폭력적 메시지의 영향력이 더욱 우려된다.

(3) 폭력적 주제를 일상적 사건으로 전개하는 가운데서 보다 잔인하고 강도 높은 폭력만이 일부 문제로 인식된다.

(4) 인명의 살상이 아닌 로봇트류, 괴물에 대한 파괴와 자연, 건물에 대한 대물폭력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며, 이같은 폭력은 폭력이 아닌 것인양 오도된다.

(5) 등장인물의 거의 전부에게서 폭력에 대한 직접적 피해의 결과나 고통이 나타나고 있지 않다.

(6) 욕설 등 비어나 속어 뿐 아니라 잔인한 대사, 신음소리, 소리지르기, 경멸적 억양 등 언어적 폭력이 과다하다.

(7) 배경음악과 효과음 등 음향적 폭력으로 폭력적 효과를 확대하고 있다.

4.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몇년동안, 특히 SBS 개국 이래 텔레비전의 어린이 수입만화영화의 편성비율은 날로 증가하고 있고, 방송위원회의 심의결과에서 보듯이 방송사가 수입하고 있는 만화영화의 질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수정, 삭제, 방송불가 판정이 늘어나고 있다. ('94년 상반기 만화영화심의현황', 1994, 방송위원회)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무적파워레인저>의 경우, 방송위원회 영화심의에서 무수정 통과되어 공영방송인 KBS 어린이 시간에 방영되었고, KBS에서 방영되었다는 사실이 합법성

을 획득하는 기준이 되어, 비디오 출시를 서두르게 된 것이다.

자료(「무적과워렌저 관련 자료집」, 1994, 서울YMCA)에도 나와있듯이, 시민단체들과 방송사, 방송위원회 전문심의위원이 갖고 있는 어린이 폭력영상물의 기본 인식에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민단체가 미흡하게 생각하는 심의결과 조차 각 방송사의 어린이 만화영화 담당자들이 전혀 승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즉 상상력과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만화영화에서의 폭력은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안된다는 태도이다. (「최근 방송위원회 심의에 대한 PD의 의견서」 참고)

최근 정부와 심의기구에서 폭력물에 대한 규제와 심의강화의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그동안처럼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몇몇 폭력 장면에 대한 삭제망을 증감시키는 것을 반복하는 일만으로는 앞으로 급격히 증가될 영상물의 폭력성을 규제할 대안이 될 수 없다.

폭력영상물에 대한 대처에 있어서 현재와 같은 법적 강제만으로는 실질적 개선효과를 거둘 수 없다. 폭력 영상물로 부터 우리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첫째, 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오랜 군사독재 정권의 통치 아래 정치, 사회, 문화 전반에 있어 폭력에 대해 길들여지고 무감각해져 왔다. 알게 모르게 젖어있는 성인문화속에서의 폭력의 확대는 어린이 영상물 속의 폭력은 별 것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릴 우려가 크다. 우리 사회는 그동안 성(性)은 어른들의 것, 폭력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것으로 인식해 왔으며 따라서 심의에 있어서도 비교적 폭력에 대해 관대해 왔다. 부모들 역시 폭력물에 대해서는 너그러우며, 폭력 만화영화에 대해서도 만화영화는 무조건 어린이용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어린이들은 이같은 폭력에 대한 사회적 무감각과 방치 속에서 폭력에 길들여지고 있다.

둘째, 폭력에 대한 사회적 분별력이 요구된다.

우리 사회는 폭력을 사용한 결과가 피가 튀거나 사람이 죽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폭력으로 인식한다. 공중도덕, 사회정의 등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동, 언어적, 심리적 폭력에 대해서는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 권선징악, 정의, 평화 등의 명분이 있으면 폭력이 정당화되고 폭력적 수단이 합리화된다.

셋째, 시민단체의 활동이 보다 활성화되어야 한다.

‘폭력 알기’ 캠페인등을 전개하여 폭력에 둔감해 있는 우리 자신과 사회의 문제의식을 일깨우고, 폭력영상물 감시와 추방운동을 범국민적으로 전개한다.

이같은 폭력에 대한 사회 전반의 본질적인 문제의식이 전제되었을 때, 다음과 같은 어린이 영상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전국 Network을 가진 KBS, MBC, SBS 등 텔레비전 방송사의 어린이 방송물에 대한 획기적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1) 어린이 방송물의 수입과 선택 및 편성의 기준은 오락성과 흥행성이 아니라, 교육성이어야 한다.

2) 어린이 방송물은 수익을 염두에 둔 편성이 아니라, 투자를 염두에 둔 편성이어야 한다. 즉 다른 곳에서 번 돈으로 어린이 방송물에 투자한다는 인식하에 어린이 방송물을 제작, 수입해야 한다.

3) 어린이 방송물은 “수입”이 아니라 우리 문화에 맞도록 80%이상을 자체 제작해야 한다. “우리의 한국 어린이로 키울 것인가, 일본, 미국의 어린이로 키울 것인가?” 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

둘째는 어린이 방송에 대한 예산상, 편성상, 인력운영상의 쿼타제를 실시해야 한다. 에컨대 전체 예산의 일정 %를 어린이 방송과 그 제작에 할애토록 해야 한다.

셋째, 현행의 방송 및 공연윤리 관계 심의제도를 바꾸어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심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고, 심의기구도 별도로 독립시켜야 한다. 아울러 심사에 참여할 전문가들도 “교육적 고려”가 보다 적극적 반영되도록 교육전문가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의 참여가 확대되어야 한다.

넷째, 어린이, 청소년 방송물 제작과 관련된 전문가 에컨대 PD, 작가, 미술가, 조명가, 만화가, 인형극전문가, 교육심리학자, 아동심리학자, 연극인, 전문 MC 등을 집중 육성시켜야 한다.

다섯째, 어린이용 방송물의 수입을 방송사별로 하지 말고, 각 방송사가 일정 출연하는 금액(공보처와 문체부가 쿼타제로 반영)을 바탕으로 Pool제로 한다. 이 기구에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서 “세계에서 제작된 가장 우수한 어린이 청소년 프로그램”만 선별 수입토록 한다.

<토론>

최보문 / 카톨릭의대 교수, 강남성모병원 소아정신과 전문의

폭력을 동반한 공포영화나 공포물에 의한 정신질환의 몇가지 예를 먼저 말하는 것이 환자를 보는 임상사로서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사례1> 9세 남아가 불안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평소 활발하고 지나치게 실을 정도로 덜렁거리던 아이였는데 최근에 '공포특급' 시리즈를 열심히 탐독하더니 갑자기 화장실에도 혼자 못가고 집에서도 엄마 옆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고 잠들기를 어려워하여 병원에 오게 되었다.

<사례2> 8세 여아가 최근의 TV극인 'M'을 보고나서 "사람 얼굴이 달라보인다. 엄마가 다른 사람같이 느껴진다. 내속에 'M'이 들어와 있다."는 등의 말과 함께 불안, 공포반응, 수면장애 등을 보여 내원하였다.

<사례3> 10세 남아가 '사탄의 인형'이라는 영화를 보고나서 자신의 몸이 그 인형이 한 것과 같이 잘라져 나가는 꿈을 반복적으로 꾸게 되었고 공포반응, 불안 및 악몽을 끝까지 잠을 자지 않으려 하여 내원하였다.

<사례4> 평소 엄마와 떨어지는 것을 싫어하고 불안증을 보이던 7세 여아가 인신매매단의 보도와 아동 유괴사건을 듣고는 신체적 흥분을 동반하는 심한 불안발작과 수면장애, 소화장애 및 사람을 피하는 행동을 보여 내원하였다.

이상의 몇가지 예들은 폭력이나 공포를 묘사한 매스미디어에 의하여 급성으로 정신질환을 보인 아동들의 이야기이다. 매스미디어라 함은 TV나 신문, 책, 광고로는 이를 묘사한 이야기까지도 포함된다 할 수 있겠으나 여기에서는 공포영화에 대하여 국한하여 말하고자 한다. 공포영화는 비밀스럽고 괴기스러운 것을 다루고 있으나 여기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은 일상에서 보기 어려운 잔인한 폭력장면이다. 폭력 및 공포에 관한 매스미디어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는 서구에서는 1970년대에서부터 이루어져 왔다. 특히 발달 도상에 있는 소아 청소년에 관한 연구는 영화속의 폭력을 모방한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면서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모방범죄 뿐만이 아니고 소아정신과 영역에서는 이러한 영화를 보고난 후에 일부 아동이 병적 불안증이나 공포반응을 보이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임상적 주목을 받게 되었다. 나타나는 증상들로는 영화속의 잔인한 살상장면의 이미지가 반복적으로 떠오르고 이와 연관된 공포와 함께 일반적 불안 수준이 증가되며 그 외에 신체손상에 대한 공포, 죽음에 대한 공포와 강박적인 반추, 성격의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도 흔히 있다. 그러므로 폭력 및 공포영화와 연관된 정신적 변화는 불안의 증가와 공격성의 변화라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하여

볼 필요가 있다.

공포영화가 발달 도상에 있는 아동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는 주로 Freud의 욕동이론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왔다. 크게 두가지 흐름이 있는데 그 하나는 카타르시스 이론이다. 즉 아동은 자신의 갈등을 투영할 수 있는 상징적 양상을 영화속의 공격장면에서 찾게 되며 이는 본능적 에너지를 자극하므로써 긴장이 고조되고 이 긴장은 불안으로 바뀌어져 이를 배출하는데에서 쾌락을 느끼게 된다는 이론이 그것이다. 또 하나의 다른 이론은 역시 Freud의 반복강박 충동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영화에 의해 고조된 내적 긴장과 불안은 배출되는 대신에 축적되므로써 이 불안이 가중됨에 따라 이를 초월하고 폭력의 기억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로서 그 행동을 강박적으로 반복하게 되거나 혹은 그와 유사한 상황을 찾게 된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이론은 각각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이 있으나 실제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나 임상적 실제 상황에서 관찰되어지는 것은 반복 강박이론의 경우이다. 아동은 그 내용이 권선징악을 다룬 happy ending의 이야기이건, 그 내용이 정신분석적이어서 발달 도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각종 갈등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다루었느냐에 상관없이, 폭력이나 모욕, 잔인함을 표현하는 영화장면에만 반응하고 있으며, 영화를 보고 난 후에 불안 상태가 고조됨을 연구자들은 보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위의 예에서 'M'의 경우아동은 정신분석적 측면에서 볼 때, 내적 bad me와 'M'을 동일시하고 어머니에 대한 기존의 양가감정이 자극됨에 따라 자아의 억제 능력이 약화되고 내적 불안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증상이 생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연구자들은 영화를 보는 상황과 내용에 따라 아동에게 끼치는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하였는데, 영화가 부모의 허락하에 집에서 보게 될 경우, 그 내용이 현실적인 상황을 다루는 것이며, 잔인함이 영화속에서 아동과 가까운 성인에 의하여 일어나는 것일 경우, 더욱 큰 불안을 야기한다고 하였다. 이는 아동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있는 집에서, 자신의 보호자라고 믿고 있는 부모에 의하여 허락된 것이며 또한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어른들에 의하여 일어나는 잔인함은, 아동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기존의 도식을 파괴하고 선택과 사악함에 대한 이분법적 사고에 혼란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반복강박적 불안으로 야기하고 않고 상황은 그 내용이 happy ending이며 영화를 보고 난 후에 영화에서 느낀 감정을 적절한 토론에 의하여 환기시킬 수 있을 때에는 불안이 감소되었음을 보고하여 여기에서 하나의 해결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의 이러한 급성불안이 어떻게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서구에서 보고되고 있는 몇가지 모방범죄를 예로 들 경우 좀더 명확해질 수 있다. 'Night Mare'에 나오는 Freddie Kruger를 모방한 LA에서의 청소년 범죄나 'Carrie', 'The Shining', 'Salem's Lot', 'Child's Play'를 흉내낸 범죄는 세인의 주목을 끈 바가 있다. 아동은 반복강박 충동에 의하여 공포 영화를 계속 요구하게 되며 영화를 반복하여 볼수록 잔인한 장면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안의 정도는 감소하게 되므로 더 강도높은 잔인함을 추구하게 되는데, 이것이 공포영화가 사람을 매혹시키는 이유중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영화속의 피해자에 대한 동조현상이 줄고 피해자의 피해나 고통을 가볍게 평가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환상속의 리허설은 폭력이나 잔인함이 나타날 수 있는 현실상황에 처했을 때, 자아의 억제 기능을 뚫고 문제의 해결책으로 폭력을 선택하는 것을 쉽게 하도록 하는 배경을 마련해 줄 뿐만 아니라 실제 기술의 모델이 된다. 사실 이러한 탈감각이론은 정신교육훈련이나 운동선수 혹은 각종 연주자를 연습시키는 훈련의 기본이며 강박신경증 환자나 말더듬이 환자의 행동치료의 기본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의 몇 개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cohort study를 한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증명 하다고 볼 수 있는데, 미디어 폭력이 많은 지역일수록 청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인간의 폭력은 동물의 경우와 달리 개인의 생물학적 조건이외에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복합적 행동 양상이다. 생물학적 조건을 알아내기 위한 여태까지의 연구는 신경해부학적 구조나, 신경생리학적 반응, 홀몬의 영향, 유전적 요소 등 광범위한 분야에서 이루어졌지만 어느 것도 폭력과 특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았었다. 생물학적 조건이외에 인간은 환경적 요소에 의하여 폭력양상이 좌우됨을 알 수 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성장기에 어떠한 경험을 하였느냐에 따른 성격구조이었다. 즉 아동기에 학대받고 자랐을 경우, 부모가 학대받고 자랐을 경우, 아동학대는 더욱 많아지면, 부모가 정신질환이 있었을 경우, 특히 부모가 알콜 중독일 경우, 폭력상황이 흔히 나타나는 집 안에서 자랐을 경우, 집밖에서라도 폭력상황에 많이 노출되었을 경우(이에는 미디어에 의한 폭력도 포함된다), 물리적 공간이 좁은 집에서 자랐을 경우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개인적 요소들은 비합리적 사고와 충동적 행동의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리하여 비폭력적인 적절한 방법으로는 개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현실상황에 처했을 때, 사회적 요소인 가난이나 약물 혹은 알콜에 의한 영향, 무기에 접근하기 쉬운 상황 등이 주어지면서 쉽게 폭력쪽으로 행동의 균형이 기울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폭력을 동반한 공포영화는 발달도상에 있는 아동에게 내적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키게 되며 성장조건에 따라 정신적 취약성이 있는 아동의 경우 병적인 상태를 야기하여 불안 신경증이나 적응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비합리적 사고와 충동적 행동의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공격행동을 일으킬 수 있는 좌절된 현실상황에서 쉽게 폭력쪽으로 행동양상이 기울게 된다. 또한 폭력적 부모에 의한 학습효과로 인하여 폭력은 세대에서 세대로 더욱 그 폭을 크게 하여 답습될 가능성이 있다.

<토론>

이윤경 / 아현어린이집 교사

어린이집은 종일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교사가 준비한 프로그램만을 가지고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더구나 오후 5시-7시 사이에는 아이들의 귀가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활동이 불가능하고 따라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를 시청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어린이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시청하다보면 아이들이 얼마나 몰입해서 프로그램에 빠져드는지, 어떤 아이들은 부모가 데리러 왔는데도 보고있던 만화를 다 봐야 집에 가겠다고 떼를 쓰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아이들 사이에도 인기있는 프로그램이 있고, 인기있는 주인공은 그들 사이의 대화의 중심이 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또 이러한 만화 주인공의 캐릭터가 그려진 옷이나 신발을 입고 싶어하고 그런 옷을 입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신이 주인공과 동일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텔레비전에서 방영되는 만화나 실사영화 등은 소리, 효과, 색채, 장면이 훨씬 더 자극적이고 선명하게 각인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더 쉽게, 빨리 등장인물에 동화되고 행동이나 사고방식을 모방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난 봄에 '무적파워레인저'가 방영되는 동안 어린이집에 있는 거의 모든 아동이 놀이시간에 주제가를 부르거나 싸우는 동작을 흉내내면서 노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몇명이 한 아동을 팔을 내지르거나 발로 차는 시늉을 하며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을 보고 "왜 여러명이 한명을 괴롭히니?"하고 물으면 우리는 무적파워레인저의 멤버이고 저 아이는 나쁜 편이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이 종영되고 난 현재까지도 아이들은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공격을 당하는 아동이 그 놀이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으며 자신이 주인공처럼 멋지게 한사람을 쓰러뜨린다는 것에 만족합니다. 그림을 그리라고 종이를 주면 대충 색칠하고 나서 종이를 맡아 총이나 칼을 만들어 놀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동작의 모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폭력적인 내용들은 아이들에게 일상생활의 사소한 문제도 폭력적인 행동으로 해결하게 만듭니다. 옷을 잡아당겼거나 자기 장난감을 만졌다고, 심지어 미끄럼을 먼저 탔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때리는 아동도 있습니다. 다른 아동에게 신체적 가격 - 때리는 것 - 을 가하는 것이 아동에게는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물리적인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과 고통을 준다면 그것은 분명 폭력일 것입니다.

<피구왕 톱키>와 <취라기 월드컵> 같은 운동경기를 소재로 하는 만화들은 그러한 폭력성이 스포츠라는 일상의 상황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더 위험합니다. 팔다리와 얼굴에 멍이 들고 부상을 당하면서도 승리를 위해 악착같이 경기에 임하는 인물들을 보고 난 아동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규칙을 지키며 건전하게 기량을 겨루는 스포츠맨십에 대해 얼마

나 설득력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경기를 위한 도구 - 아이들에게는 놀이의 도구로 사용되는 '공'조차도 무시무시한 흥기로 바뀌는 스포츠의 가면을 쓴 이러한 폭력물 속에서 아이들이 병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어린이들의 만화영화에서는 폭력을 당하는 사람의 고통은 표현되지 않고 정의의 용사가 행하는 폭력의 통쾌함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즐거리에서, 대사에서 한두번 '정의'나 '우정' 따위를 언급한다고 해서 폭력성이 합리화되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은 우리 어린이들이 이러한 텔레비전 만화영화의 의존도의 심각함과 그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과소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린이들은 전체 즐거리나 상황설정과 상관없이 등장인물의 옷, 무기, 동작에만 관심을 갖고 화려한 섬광과 폭발음, 기합소리 등 자극적인 장면에만 몰두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러한 폭력적인 장면의 반복이 어떠한 누적적 영향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형극 <부리부리박사>나 만화 <플란다스의 개>에서 느꼈던 소박한 즐거움과 아름다운 우리 아이들에게도 나눠줄 수는 없는걸까요? 상상력을 발전시키고 꿈과 희망을 주는 건강한 만화영화나 정의에 대한 사랑과 불의에 대항하는 용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재미 있고 신나는 이야기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아이들의 시선을 붙들 수 있다는 알파한 상업적인 계산만으로 싸구려 폭력물들을 계속해서 보여준다면 아이들의 영혼은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들이 이에 대해 얼마나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지가 이러한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새날을 여는 사람들

- '삼성어린이개발센터'를 찾아

현장과 이론의 만남을 위해

왕미혜 / 편집부, 본회 문화홍보부

잠실역 교통회관 쪽으로 나오면 높다란 빌딩 하나가 눈에 들어온다.

어린이 교통회관 바로 건너편에 위치한 우리의 목적지는 보통의 사무실과는 분위기가 무척 달라, 마치 무슨 갤러리에 와있는 듯한 긴장감을 품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야 했다.

조용한 공기를 뚫고 들어가 어린이개발센터를 물으니, 벽이 없는 그 커다란 사무실의 한쪽이 바로 어린이개발센터의 공간이란다.

나중에 들으니 어린이개발센터와 미술문화센터가 한 층을 같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아동 관련 파트를 한데 모아 나름의 연관성을 두고자 한 것이었다.

우리가 도착했을 당시에는 오문자씨(삼성어린이개발센터 대표)는 어떤 분과 이야기 중이었고, 지탁연에서 왔다고 하자 금세 화색을 표하며 우리를 환영했다.

우리는 일단 오문자씨의 안내로 열람실과 자료실을 살펴보았다. 보육 뿐 아니라 아동에 관련된 것이라면 무엇이든 보관하고 있는 듯 했다.

보기드문 외국 관련서적이나 색인열람실, 색인열람을 할 수 있는 컴퓨터가 눈에 띄었다. 도서관 뿐 아니라 아동교육이나 부모교육과 관련된 내용의 비디오도 상당수 있었는데, 비디오를 직접 볼 수 있는 비디오 시스템과 커다란 모니터도 구비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보육(아동)과 관련한 논문이 무척 많았는데, 아직 어린이개발센터가 널리 홍보되지 않아 논문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한다.

어린이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는 많은 이들이 알듯이 삼성그룹 소속이다.

삼성생명과 삼성복지재단에서는 직장보육시설의 형태나 시, 구립의 형태로 탁아소를 설립, 기증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작년인 93년 12월 10일 상도어린이집의 지하공간을 활용하여 보육정보센터로 개관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보육정보센터로 등록하였다.

기업에서 탁아사업을 한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잇점은 바로 재정의 탄탄함이라고 서슴없이 말한 오문자씨는 기업의 사회참여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일전에 어느 세미나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논의를 한 적이 있어요. 기업의 역할은 질적 사

탁아활동의 길잡이 36

업의 담보에 있다는 것이었죠. 지금 바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일같은.."

반년을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고민하고 나름의 활동을 하다가 개발센터는 공간(열람실)의 협소함과 더불어 영역의 확대, 인식의 확대를 위해 올 6월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명칭 또한 어린이개발센터로 변경하였다.

"어느 시설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보사부의 아동이 되고, 교육부의 아동이 되는 현실이 싫었어요. 어린이문제는 사회에서 전반적으로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게 우리(개발센터)의 근본 생각이죠."

보육정보센터라는 명칭은 활동이 '탁아'에만 한정되는 것 같아 어린이개발센터로 명칭을 바꾸게 된 것입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개발센터로 그 명칭과 장소를 변경한 것은 '어린이' 전반의 문제로 사업과 고민의 중심이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탁아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벌어나갈 것이지만, 이름의 변화 만큼이나 포괄적인 사업을 통해 아동에 대해 종사할 생각이라고 한다.

어린이개발센터는 탁아의 '질'을 주로 고민하고 사업으로 계획한다. 이는 결코 '양'의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다. 수요급증으로 양을 보충해야 하지만 '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고, 무엇이 먼저고 무엇이 나중이라는 식의, 순차적으로 고민하지 말자는 것이다. 극단적으로 질과 양을 논의하는 단위를 굳이 나눈다면 어린이집의 교육적 부분을 뒷받침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되는 것이 개발센터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다.

어린이개발센터는 현장과 학계를 연결하는 활동방향을 세우고 있다.

현재 0세-2세 교육프로그램과 교재, 교구의 개발을 교수에게 위탁하여 추진중이며, 이러한 것이 바로 현장과 학계를 연결하는, 개발센터의 주요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영양식단과 부모교육 소책자 발간을 통해 교육과 현장을 연결할 생각이며, 어린이집 개원에 대한 문의들이 상당히 많아 이를 위한 설치안내서도 만들 계획이다.

"현장에 이론을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고민입니다.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 고민에서 나온 하나의 대안으로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수들을 초청하여 개발센터 열람실 등을 견학하게 하고, 모임을 만들어서 내용과 의견을 수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한편 현장과 이론을 연결하겠다는 사업방향에 맞춰 국제학술회의나 "우리 탁아의 질, 어디로 가야 하나?"도 개최하였는데, 연1회 정도 대규모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여서 외국의 경험들을 국내로 전달시키고 경험을 확대시키는 계기를 만들 생각이다. 올해의 경우 정책적인 내용을 다루었는데 내년부터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란다.

대화의 내용을 바꾸어 요즘 간간히 거론되고 있는 '통합'에 대한 의견을 여쭙보았다.

"유치원과 탁아소의 통합에 대해서는 일단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보사부와 교육부를 합친 것 같은 성격으로 하나의 '국'차원으로 독립되어 나오기도 합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동의 문제를 여러 곳에서 논의하기 보다는 제3의 대안으로 '아동국'과 같은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외국의 경우와 함께 오문자 대표 자신의 미국유학시절을 이야기해 주었다.

"미국 유학시절 저 역시 학교다니면서 아이를 학교 안에 마련된 탁아소에 보내본 적이 있어요. 그곳은 140불(학생)에서 350불(직장인)의 차등보육료를 실시하고 있었는데 차등보육료에서 발생하는 차액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죠."

지탁연 소속의 어린이집이나 몇몇 개별적으로 하고 있는 차등보육료를, 자본주의의 최선두라는 미국에서도 국가차원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에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을 다시금 확인해볼 수 있었다.

'보육정보의 전산망화' 계획으로 신문기사에 소개된 후, 어린이개발센터의 이용객은 급증하였다. 그중 시설상담이 제일 많은데, 보육시설이라는 용어로 인해 고아원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어 어린이집에 대한 인식의 부족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인지 오문자씨는 '보육시설' 대신에 '탁아소'라는 용어를 고집한다. 그 다음으로 어린이집 소재에 대한 궁금증과 교육, 어린이 생활교육 등 부모들의 양육상담이 많았는데, 어린이개발센터에서 다 풀어줄 수 있는 사안들이 아니기에 주로 진단센터나 치료센터를 소개, 연락해주는 정도로 그치게 되는 것이 때론 무척 안타깝다고 한다. 그외에 자료를 구하는 전화나 일자리(보육교사)알선 문의전화가 많이 온다.

어린이개발센터는 현재 오대표를 비롯한 3인의 실무진과 사서1인이 활동하고 있다. 3명이라는 적은 인원으로 그 많은 전화문의를 일일이 다 받을 수 없는 한계로 인해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

전산화에 대한 계획은, 문의의 빈도에 비해 시설에 관련한 정보나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해 시도하게 되었다. 지금은 사업 추진의 어려움으로 인해 잠시 중단한 상태이나 내년에는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본다. 아무래도 개발센터 자체가 지역사회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산망(상담정보 프로그램) 설치나 자원봉사자를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이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지금 어린이개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활동은 소식지(news letter)발간으로 이미 창간호가 나왔다. 계간으로 발간되는 소식지 작업은, 실무진이 적은데다 아직 첫 단계라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 지탁연의 소식지가 이때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오문자 대표의 이야기에 잠시 어깨도 으쓱해봤다.

소식지 발행과 함께 자료실 운영 역시 자체활동이다. 7월부터 개방된 자료실은 누구에게나 항상 개방되어 있고, 자료정리 관계로 10월 이후에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한다. 이외에도 조만간에 요구도가 상당히 많음으로 해서 아동도서목록과 외국서적목록을

정리하여 선보일 예정이다.

또하나의 활동계획은 최초의 보육정보센터라는 위치에서 기인한다.

“영유아보육법상에 보육정보센터의 관련법항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사실상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상이 제대로 있는 것은 아닌 현실에서, 다른 곳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여야 할 지 몰라 문의하는 상담전화가 걸려오기도 해요.”

보육정보센터를 하려고 하는 곳에서 보육정보센터를 어떻게 만들고 운영해야 하는지, 무슨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현실에 답답함도 느꼈을 터이다. 동네마다 하나씩 있어야 할 정보센터가 아직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태부족이다 보니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런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는지 보다 많아져야 할 보육정보센터를 위해, 개발센터에서는 보육정보센터의 기능과 설치에 대한 안내서를 내년쯤 만들어 보급할 것이다.

어느새 시간은 나른한 오후로 치달고 있었다. 오전의 상쾌함으로 나선 방문길은 이제 사무실로 향하는 발길이 되어야 할 때가 온 것이다.

바쁜 와중에도 “우리네 아이들”에 시간을 내준 오문자씨에게 감사를 표하며 마지막으로 지탁연의 현장고사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부탁했다.

“지탁연은 현장과 가장 가깝게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장에서 활동하는 바로 여러분의 정리된 목소리가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저희에게 현장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어린이개발센터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찾아서 개발하고 사업으로 만들어 보이겠습니다.”

대학시절 4년간 내가 학교 강의실에서 가장 많이 들었고, 나 스스로 상당히 동감했던 것이 바로 현장과 학계의 분리된 현실이었다. 서로가 연계를 맺어야 발전하는 것임에도 아직도 서로의 아집을 깨지 못해 따로 노는 듯한 현실을 보면서 삼성어린이개발센터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새삼 느껴본다.

삼성어린이개발센터 여러분, 화이팅!

■ 특집1

현 시기 영유아보육사업의 현실과 개선방향

정리 서정은 / 본 회 특위간사

요 약

- 1) 현재 우리나라는 가족기능 약화와 가족 책임의 한계 상황에 다다르고 있다. 핵가족, 소가족, 가족이기주의 등으로 아동양육(성장)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국가도 육아의 수혜자라는 점 등으로 => 육아에 관한 국가,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고 있다.
- 2) 그러나 국가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경우(저소득층 등)에만 가정내 양육을 대체하는 방향으로 책임 범위를 설정하였다.
- 3) 영유아보육시설은 가정양육의 대체 형태가 아닌 가족의 육아기능을 지원하는 지지적 서비스로서 제대로 된 내용을 가져야 한다.
- 4)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을 위한 환경이 제공되는 공간으로 영유아보육을 고민해야 한다.

I. 들어가는 말

탁아는 노동력, 가족정책, 아동과 여성의 복지 문제인 동시에 평등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책은 여성, 아동, 가족, 고용주와 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집단들의 요구를 조정함으로써 나올 수 있다.

우리는 부모가 취업한 아동뿐만 아니라 모든 아동의 지위와 요구를 고려하지 않고는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아이를 키우는 동안 노동시장을 돌락날락하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어느 시점에서 어머니가 취업할 가능성은 언제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모든 탁아정책이 아동의 요구에 기반해야 한다고 믿으며, 부모들이 취업하고 있을 때, 아동들이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육을 받는 것이다. 이외에도 많은 요구가 있는데, 이 모든것이 탁아 서비스와 정책에 반영되어야 한다.

탁아서비스나 정책을 부모가 취업한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로 분리시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모든 아동들에 대한 서비스라는 관점에서 발전시키고 이해해야 한다. 왜 정부가 그러한 책임을 지는가? 그것은 어린이가 모든 사회의 미래이기 때문이다. 아동들이 건강하게 양육되는 것을 보장하는 것과 부모들이 직업 유무에 상관없이 2세를 양육할 수 있

도록 도와 주는 것은 중요한 사회적 관심사 중의 하나이다.

사회는 아동을 보육하는 일이 부모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많은 책임을 지고 있다. 현재의 탁아제도와 고용은 여성 불평등의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아동은 가족의 일원인 동시에 시민이다. 사회는 아동을 해악과 곤궁으로부터 지켜주어야 하며 부모들의 수입정도에 따라 그들이 받는 서비스의 질이 달라지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II. 현시기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사업 개괄

1. 영유아보육법 1991년 제정

- ① 영유아보육문제의 해결 움직임 확산되면서 영유아보육법 제정.
- ② 영유아보육법 제정 4년기간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영유아보육사업을 벌이던 실질적 기간.

2. 우리나라 영유아보육사업의 기초

- ① 영유아보육문제 해결의 일차적 책임은 수혜자 부담원칙 (부모 부담)으로 명시.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영유아보육해결 부분 책임.
(전체 아동의 30%이상: 1997년까지의 보육예산, 기금의 30% 배정계획)
- ③ 나머지 일반아동에 대한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해결토록 유도.
(전체 아동의 70%: 1997년까지 보육예산, 기금의 70% 배정계획)

3. 보육시설의 종류와 시설 및 보육아동 현황

(1994. 3.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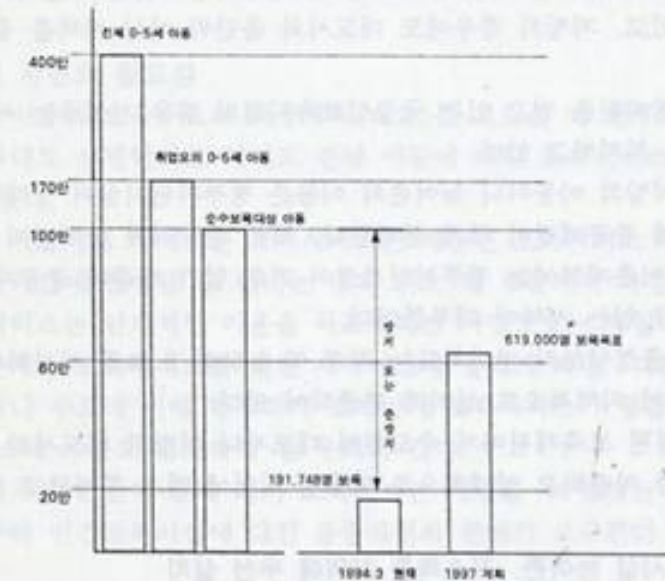
구분	명칭	설립주체	설치 방법	규모
국.공립보육시설 924(개소) 67,893명	어린이집	국가, 지방자치단체	/	영유아
민간보육시설 2,714개소, 102,621명		법인, 단체, 개인	인가	15인 이상
직장보육시설 30개소, 716명		사업장의 사업주		보육
가정보육시설 2,415개소, 20,518명	놀이방	개 인	신고	영유아 5인 이상 15인 이하
총 6,086개소에 191,748명이 보육되고 있다.				

4. 현 영유아보육사업의 핵심사안

1) 영유아보육시설의 확충

(1994. 3. 현재)

- ① 전체 0-5세 아동 395만명, 그 중 취업모의 0-5세 아동 170만명,
그 중에서 영유아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순수 보육대상 아동을 65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 ② 현재 순수 보육대상 아동 65만명의 30%인 19만 2천명이 보육되고 있다.
- ③ 1997년까지 95%수준인 61만 9천명 보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 ④ 458천명에 대한 보육시설의 확충이 1997년까지의 국가의 해결 과제이다.



(표1. 아동의 보육 수요와 확충계획 비교)

2) 영유아보육사업의 질 향상

- ① 영유아보육사업을 짧은 기간동안 해결하고자 함으로 나타나는 문제:
영유아보육행정의 비전문성, 수공업성 지적.
이용자 - 운영자 - 국가의 전달체계 미비.
- ② 영유아보육시설에서 행하고 있는 교육과 보호 활동의 전문성 강화가 시급한 문제.
- ③ 안정적인 운영, 교사의 양성과 처우 개선, 영유아보육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적절한 교육환경 등
전문적인 영유아보육사업 방향과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검토 필요.

5. 현시기 영유아보육사업의 개선방향

1)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과 영유아보육사업의 모범 창출 유도

① 전 계층의 아동에게 국공립 보육시설 중심의 최저 수준의 보육서비스 제공
절대 빈곤층의 아동에게 공공재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분배하여 최저 기준
의 보육수요 해결하고 상대적 저소득층에게도 소득별 차이를 고려해 나머
지 공공재원을 지원하여 최저 수준의 보육서비스를 제공.

② 국공립보육시설의 대도시, 수도권 중심의 지역적 편중 개선

- 보사부 자료에 따르면 지역적으로 볼 때 정부지원시설은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의 경우에도 대도시와 읍단위 이상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
-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수는 서울이 전체의 약 39.4%를 차지하고 있다.
- 중소도시 지방의 아동이나 농어촌의 아동은 정부지원시설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공공재원이 적게 분배된다. 특히 순수하게 농어민이 이용할 수 있는 농어촌지역에는 정부지원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공공재원이 전혀 분배되지 않는 지역이 대부분이다.
- 예를 들어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각각 약 2.5%와 3.0%를 차지하여 국공립보육시설이 지역적으로 심하게 편중되어 있다.
- 정부의 한정된 보육재원마저 수도권의 대도시나 지방의 대도시의 대규모 시설 위주로 집중 지원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에 적게 투자되고 있다.

④ 국공립 보육시설 농어촌, 저소득층 지역에 우선 설치

-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대상보육수요 아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시설 자체가 없는 농어촌지역이나 저소득층지역에는 전혀 공공재원이 분배되지 않고 있다.
- 즉 보육대상아동은 있으나 민간이 영리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어려운 농어촌이나 중소도시에는 보육시설이 자체가 없어 공공재원 자체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다.

2) 민간의 보육사업에 대한 공공성 담보를 지원하는 정책 유도과 운영

취업모의 일반아동에게 소득획득이나 자아실현을 위해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부모를 대신하여 제공하는 일반 민간보육시설이 공공사업으로서 보육사업을 제대로 펼쳐나가기 위한 법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
또한 민간의 보육사업 주체들이 비영리 복지사업으로서 보육사업을 펼쳐나가는 노력과 자세도 필요.

3) 전 사회적으로 아동 중심의 올바른 보육관과 좋은 보육환경을 위한 기반 마련

: 어른들의 필요에 의해서 아동을 보육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관점에서 창의력을 개발하고 미래 자아 실현을 위해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도모해야 한다.

4) 지역사회의 생활문제 중 하나인 영유아보육문제에 지역사회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 토대 마련

6. 민간 보육사업 공공재원 지원의 필요성과 현실

1) 공공재원 지원의 필요성

- ① 앞 <표1. 아동의 보육수요와 확충계획 비교>를 보았을 때 정부가 보육시설 확충목표를 계획대로 실행한다고 하여도 전체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에 민간이 참여할 수 밖에 없다.
- ② 성장하는 아동에게 행해지는 보육서비스는 제공된 보육서비스 후 나타나는 효과를 단기간에 뽑아낼 수 없다는 것과 어느 한 부분에서 측정할 수 없다
- ③ 즉 보육서비스는 단기적인 이윤을 목표로하는 사업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 ④ 그런데 문제는 보육서비스를 민간 사적시장에 맡기게 되면, 다른 단기성 영리사업에 밀려나 수요에 비해 현저하게 모자라게 보육서비스가 공급될 것이고, 보육서비스의 수준도 열악하게 될 우려가 많다.
- ⑤ 따라서 국가와 민간이 함께 해야 보육문제는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이로부터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재원의 분배가 요구된다.

2) 민간보육사업의 공공재원 지원의 현황

① 민간시설의 12%에 한정된 공공재원 지원

1994년 3월 기준으로 볼 때 민간.가정보육시설 중 5,129개소 중 정부지원 법인이나 단체는 652개소로 12%에 한정된 시설만이 공공재원 지원을 받고있다.

<그림1. 전체 시설 중 정부지원시설이 차지하는 정도>

정부 미지원시설 4,480개소 (74%)	정부지원 시설 1,576개소(26%)
전 체 시 설 6,056 개소	
민간.가정보육시설 5,124개소 (85%)	국공립 924개소(15%)

<그림2. 전체 시설 중 민간과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

<그림3. 민간.가정보육시설의 국가지원 정도>

민간. 가정시설	
미 지원 (88%)	지원(12%)
영리화->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영리화 <-정부지원 <-민간기금>	

②.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소규모 시설 제외된 공공재원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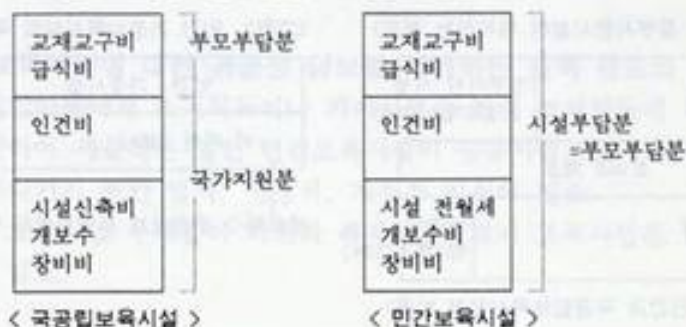
그나마 지원을 받고 있는 민간보육시설들은 다른 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고 재정수지가 좋은 편. 왜냐하면 일단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을, 일정한 기준이상의 종사자가 있으면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저소득층 밀집지역이나 공단지역 등에 위치하여 보육료만으로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설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거나 일정한 기준이상의 보육시설 요건을 갖추고 있지 못하여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보육시설은 정부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는 모순이 나타난다.

이와같이 한정된 공공재원을 지원할 대상을 잘못 선정함으로써 오히려 민간보육시설간에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 상대적으로 지원이 더 필요한 열악한 여건의 보육시설보다 지원이 덜 필요한 보육시설에 한정된 공공재원을 편중 지원하고 있다.

③. 안정된 보육사업은 민간보육시설의 공공재원 지원으로부터

- 보육료 수입이 대부분의 운영재원을 차지하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보육수준의 질적 저하가 심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곳이 있는가 하면 시설장의 인건비도 나오지 않는 시설이 대부분이다.
- 또한 지출경비의 대부분이 교사 인건비와 월세 등의 건물유지비가 차지한다 아동들에게 직접 부여되는 급식비나 교육비는 항상 부차적으로 밀리는 상황이다.
- 정부의 재정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보육료에 의해서 건물유지비나 개보수비, 경상운영비 등 모든 경비를 충당하게 된다.
- 그러나 보사부에서 고시한 표준보육단가는 민간보육시설의 시설개보수비가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대부분의 개인운영 민간보육시설이 전월세인 현실에서 전세나 월세 인상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비마저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더욱이 표준보육단가 수준의 보육료조차 내기 어려운 보호자들이 많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보육시설의 어려움은 더한 상태이다.

<그림 4. 국공립시설과 민간보육시설의 운영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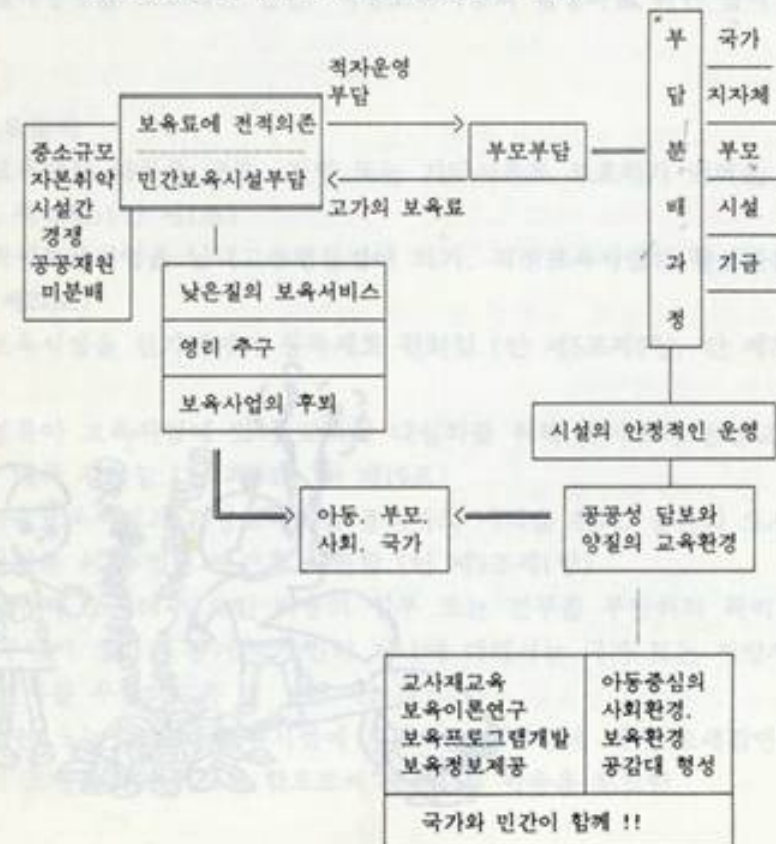
3) 민간차원의 노력

- 공공재원의 분배와 함께 민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보육시설의 운영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 1994. 10 현재 전국에 소재한 지역 민간보육시설연합회들이 모여 「(가칭) 한국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추진위원회(위원장 최현숙, 본 회 회장)」를 결성하였다.
- 4천여개 민간보육시설들이 복지사업으로서의 공공적 위상속에서 설치, 운영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7. 맺음말

민간,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공공재원의 분배가 없을 경우 이들 시설의 영리화는 필연적이다. 이들 시설이 전체 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볼 때 한국 보육사업의 영리화라는 결과를 낳는다. 사회의 미래인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는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공익사업으로서 보육사업이 자리잡기 위해 설치와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사회자본의 분배가 보장되어야 한다. 더불어 민간차원에서 이를 위한 기금 조성등의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림 5. 민간보육시설의 운영과 자원분배 흐름도>



※ 참고자료

보육사업지침 (1993.1994. 보건사회부)

유럽공동체 12개국의 탁아현황과 탁아정책

(1993. 동국대학교 부설 사회조사연구소)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993.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한국아동보육의 재정운영분석 및 정책 제언 (1993. 이석무)



■ 특집2

영유아보육법중 개정법률안

얼마전 민주자유당(주앙자 의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을 발표하였다. 민자당의 개정안은 보육대상 아동을 확대하는 것과 직장보육시설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하도록 하는 것, 보육시설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러한 민자당 개정법률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계획이다. 한편 본 연합회등 4개단체에서는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10/27)하였으며 이의 내용을 개정안에 이어 실는 바이다.

1. 개정이유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보육대상을 전체 영유아를 확대하고 영유아교육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직장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보육대상 아동을 근로, 질병 또는 기타사유로 보호하기 어려운 영유아에서 모든 영유아로 확대함.(안 제1조)

나. 직장보육사업을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직장보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안 제6조, 안 제27조)

다. 보육시설을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완화함.(안 제5조제5항, 안 제7조제2항 안 제12조)

라. 영유아 보육사업에 있어 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유아교육 전담교사의 기준 및 교육기능을 대폭 강화함.(안 제9조, 안 제19조)

마. 농촌보육시설과 가정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을 완화, 농촌과 도시 취약지 보육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9조제1항)

바. 영유아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되 특히 저소득층 자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농어촌 주민의 자녀에 대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하도록 함.(안 제21조)

사. 법인 또는 개인이 보육시설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함으로써 보육시설 확충을 도모함.

영유아보육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영유아에 대한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영유아를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그 보호자로 하여금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유아"라 함은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2. "보육시설"이라 함은 보호자가 근로 또는 질병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영유아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을 말한다. 3.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기타의 자로서 영유아를 현재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4. "보육시설종사자"라 함은 보육시설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기타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1. (현행과 같음) 1의2. "영아"라 함은 3세미만의 아동을 말한다. 1의3. "유아"라 함은 3세이상 6세미만의 취학전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시설로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유아교육기관이 아닌 시설을 말한다.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제3조(책임) ①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제3조(책임)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육위원회) ①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사회부에 중앙보육위원회를 두고,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이하"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구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에 한한다)에 지방보육위원회를 둔다. ②보육위원회는 복지 및 유아교육전문가, 보육시설종사자대표, 보호자대표 또는 관계공무원등으로 구성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보육위원회)①..... 구(자치구인 구에 한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5조(보육정보센터) ①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하며, 구청장의 경우는 서울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청장에 한한다)은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육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②보육정보센터에는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상담 및 지도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육지도원을 둔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과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보육정보센터) ①.....(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 관한.....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 2 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 2 장 보육시설의 설치
제6조(보육시설)보육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 공립보육시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운영하는 시설 2. 민간보육시설: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	제6조(보육시설)..... 1. 국가 또는 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3. 직장보육시설: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 운용하는 시설 4. 가정보육시설: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 운용하는 시설	3. <u>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육시설</u> 4. (현행과 같음)
제7조(보육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국, 공립보육시설은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지역 등 취약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법인, 단체 또는 개인은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 민간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의 사업주는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의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개인은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고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인가 및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보육시설의 설치) ①(현행과 같음) ②..... <u>시장, 군수, 구청장(이하 "시장, 군수"라 한다)의 등록을</u> ③(삭 제) ④개인이 가정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u>설치등록</u>
제8조(보육시설의 시설기준등)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시설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사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보육시설의 설치기준등) (현행과 같음)
제9조(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①보육시설에는 설치의 장 및 보육교사와 기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종사자를 두어야 한다. 다만,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보육교사와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보육시설의 종사자 기준) ①..... <u>다만, 가정보육시설과 농어촌지역에 설치된 수용인원 15인이하의 보육시설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교사 기타 종사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u>

현행	개정(안)
②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 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③보육시설종사자의 수와 보육교사의 종사자의 자격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u>다만, 3세이상 6세 미만의 유아를 보육하는 보육교사는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u>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④보건사회부장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사회부령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 및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보건사회부장관은 보육시설종사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건사회부장관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교육훈련시설(이하 "교육훈련시설"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시장, 군수는 보육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하거나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기준등을 위반한 때 2.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키지 아니한 때 3.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 및 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때 4. 이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10조(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현행과 같음) ②..... <u>교육훈련시설에</u> <u>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u>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제13조(청문)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시설의 장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불명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청문) (현행과 같음)
제14조(보육시설연합회)①영유아의 보육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육 시설연합회(이하"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연합회의 조직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보육시설연합회) ①..... 보육시설연합회를 ②보육시설연합회의.....
제 3 장 보육시설의 운영	
제15조(보육시설의 운영)①제7조제1항에 의하여 설치한 국.공립보육시설은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보육시설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6조(보육시설의 입소대상)보육시설의 입소대상은 영유아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4조제1항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 또는 지방보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입소대상 연령을 12세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제17조(우선입소)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한 보육시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육시설의 장은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를 보육시설에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제17조(우선입소) ①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②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에 사업장 근로자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한다.	② (삭 제)
제18조(보육내용)보육시설에서의 보육은 영유아의 신체적, 지적, 정서적 및 사회적 발달등을 도모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보육내용은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보육내용) (현행과 같음)
제19조(장학지도등)①보건사회부장관은 제18조에 의한 영유아보육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장학지도와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교구의 개발보급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장학지도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장학지도등)①교육부장관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② (삭 제)
제20조(건강진단)①보육시설의 장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유아와 교직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영유아에 대해서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건강진단) ①..... 보육시설종사자 및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치료를 요하는 보육시설종사자 및 영유아에 대하여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보육시설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 4 장 비 용	
제21조(비용의 부담)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21조(비용의 부담)①.....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녀

현행	개정(안)
	2.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자녀 3.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농어촌주민의 자녀
제22조(비용의 보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영유아의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22조(비용의 보조)① (현행과 같음)
제23조(사업주의 비용보조)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여야 한다.	제23조(사업주의 비용보조) (삭제)
제24조(비용의 수납)제7조에 의하여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비용의 수납) (현행과 같음)
제25조(세제지원)제21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과 제7조제3항 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는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한다.	제25조(수납지원)제6조 각호의 보육시설에 대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자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하여 지출한 보육비용에.....
제26조(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시설의 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의 목적 이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 2.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제26조(보조금의 반환명령)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	개정(안)
제 5 장 보 칙	제 5 장 보 칙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다.	제2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만, 직장보육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남녀고용평등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28조(교육경력 인정)보육시설에 근무하는 자중 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교원의 자격을 가진 자에 대하여는 동 시설에서의 근무경력을 교육법에 의한 교육경력으로 인정한다.	제28조(교육경력 인정) (현행과 같음)
제29조(보고와 검사)①보건사회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보고와 검사)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0조(권한의 위임)이 법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0조(권한의 위임) (현행과 같음)
제 6 장 벌 칙	제 6 장 벌 칙
제31조(벌칙)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육시설을 설치한 자	제31조(벌칙)..... 또는..... 1. 또는.....

현 행	개 정 (안)
2.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의 명령에 위반하여 사업을 계속한 자	2. 보육시설을..... 3. (현행과 같음)
제32조(양벌규정)법인이나 단체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의 대리인, 사 용인, 기타의 종사자가 그 법인이나 단 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1조 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2조(양벌규정) (현행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1조(시행령)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 행한다.	①이 법은 1995년 월 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탁아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하여 설치된 탁아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 육시설로 본다.	제2조 (삭 제)
제3조(사업장육아시설등에 관한 경과조 치)이 법 시행당시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설치된 사업장육아시설과 시범 탁아소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 시설로 본다.	제3조(삭 제)
제4조(새마을유아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 마을유아원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 다.	제4조(삭 제)
제5조(미인가탁아시설등에 대한 경과조 치)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제5조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영되고 있는 탁아시설이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육시설로 본다.	
제6조(시설 및 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사업장 육아시설 및 시범탁아소와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등이 부칙 제 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시설 및 종사자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삭 제)
제7조(재단법인에 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당시 아동복지법에 의한 탁아시설 및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새마을유아원이 부칙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이 법에 의한 보육시설로 인정받 은 경우로서 동 탁아시설 내지 새마을 유아원만을 운영하는 자가 민법에 의하 여 설립된 재단법인인 경우에는 동 법 인을 보육시설의 운영만을 목적으로 사 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 본다.	제7조 (삭 제) ②(설치인가를 받아 설치한 보육시설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 설치한 민간보육시설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동 록한 것으로 본다.

<부록>

민자당 주양자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영유아보육법 개정 취지에 대하여

금번에 마련된 주양자 의원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보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듣고 수렴하는 가운데 만들어진 법안이기에 감사를 드린다.

특히 보육사업의 목적을 제한적 아동에서 보편적인 아동의 사업으로 확대한 것은 한국 보육사업의 성격을 발전적 미래지향적 성격을 담지하려는 의도여서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적극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본 개정안은 그간의 폭넓은 수렴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사업의 여러 영역 중 몇가지 사안에 집중함으로써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다른 많은 부분을 놓쳐버렸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

또한 본 개정안에서 나타난 핵심적인 개정 의도가 직장 보육사업의 활성화와 보육의 질적 고양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보는데 이 영역은 보육사업에 있어서 현재적 미래적 과제여서 중요하다고 인정한다. 다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도에서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비용부담 원칙이 개정되어야 한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용부담의 원칙이 「수혜자 부담」이라는 데 있다. 현실적으로 국공립 보육시설은 국가, 부모의 공동부담이고, 민간, 직장, 가정 보육시설은 수혜자 부담이어서 국민들은 단지 국공립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보육아동 20만명 중 1/3은 국공립, 2/3은 민간, 가정 시설 이용)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며 민간 시설 운영자들은 심각한 운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는 처지이다. 이러한 원칙이 개정되지 않는 한 현 개정안에서 발전적으로 제기한 보육사업의 목적도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비용부담을 수혜자 부담에서 공동부담으로 바꾸고 다만 시책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그 지원의 폭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2) 자치사무의 범주가 명확해져야 한다. (조례제정권 신설)

보육사업은 국가위임사무와 자치사무가 결합된 사업이다. 따라서 본 법안에서 애매하게 규정된 양 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밝히고 나아가 지방정부의 자치사무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이 명시되어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고 선진적인 작업이라고 본다.

3) 보육위원회 강화를 위한 조항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육사업은 구체적인 사람에 대한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 주도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업이다. 따라서 많은 민간의 자발적이고도 창의적인 관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보육위원회의 강화를 위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

4) 직장보육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무부서의 변경없이 노동부의 행정체계가 본 사업에 배치되도록 장치해야 한다.

본 법안은 이전의 직장탁아 근거 조항인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을 부활시키면서 사실상 노동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고 보여진다.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동부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은 주무부서의 환원이 아니고 노동부의 행정체계가 직장보육사업에 개입할 수 있도록 장치하는 데에서 해결점이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현재 보사부가 담당하는 보육사업이 지역 보육시설의 경우 내부부의 행정체계를 통해 관리 운영되고 있으나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이들이 체계적으로 관리, 독려한다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라 보기 때문이다.

현재 직장보육의 경우 주무부서가 이동한 듯한 경향성을 보여주는데 만약 그런 의도라면 이는 이전 법제정 당시 통합성에서 퇴행한 것일 수밖에 없고 틀림없이 직장 보육의 질적 문제가 야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미취학 아동의 보육, 교육의 문제가 통일시대에는 새로운 통합을 요구받을 것으로 전망하는데 주무부서 분할의 경험은 이후 상당한 혼란을 낳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직장보육의 경우 현행 체계를 유지하는 가운데 노동부의 역할과 행정체계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5) 보육교사에 대한 안은 보사부 안이 적합하다.

보육의 질적 고양을 위하여 교육부의 역할을 강화한 것은 지지하나 보육교사에 대한 조항은 너무 편파적이어서 현실적으로 현재 보사부가 마련한 개선안이 적합하다.

2. 각 조항에 대하여

제1조 적극 찬성한다.

제2조 1항 제16조 <보육시설의 입소대상>에서 대상 연령을 12세까지로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으나 제2조에 명시되지 않아서 취학후 보육이 실시되는 데 있어서 보육료나 지원체계가 단절되고 있다. 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2항 현재 유아교육진흥법에 의한 시설이 있는지 정확하게 검토하고 삽입했으면 좋겠다.

제3조 보육의 책임을 규정하는 조항에서 국민책임을 우선하여 명시함으로써 국가는 단지 선언적 책임을 갖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1항과 2항의 순서를 바꾸기를 제안한다.

제4조 보육위원회의 실질적 기능 강화가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위원회가 가질 수 있는 알 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지방보육위원회의 구성 및 구성비율에 대해서 조례제정권이 삽입되길 바란다.

제6조 '또는'으로의 조항 변경을 지지한다.

직장보육시설의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적합하다.

이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노동부 역할 강화 및 남녀고용평등법의 기능 부활을 만들어 내는 것이 옳기 때문이다.

제7조 2항 인가제를 등록제로 바꾸는 것을 반대한다.

이는 보육시설의 수요 공급에 대한 조절 기능을 살려내야 하기 때문이다.

일례로 서울시의 경우 22개 구에서 민간보육시설이 보통 10개소 안팎이어서 전체적으로 부족한 지경이나 구로구와 성동구의 경우는 50개에서 80개소에 달하므로 아동난에 시달리고 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조절기능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만 직장보육시설의 경우는 지역시설과 달리 수용규모와 상관없이 무조건 인가제이고, 기존이 많이 다니는 사업장이 중소규모 사업장이어서 보육시설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소규모일 것을 고려해 볼 때, 설치의 용이함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히려 직장보육시설은 가정시설과 마찬가지로 신고제로 대폭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3항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로 명시하기를 제안한다.

제9조 1항의 경우 현행 법조항을 유지하고 2항을 신설하여 농어촌 지역의 교사조건을 명시하기를 제안한다.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5~7명) 6명에서 15명의 아동까지 돌볼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외국과 유사한 규모는 아예 신고조차 받지 않는 실정이며 신고를 요하는 시설은 일정한 규모를 갖춘 경우이다. 따라서 단지 가정보육시

설이라는 동의어로 인해 외국의 예를 적용하는 것은 우리 현실에서 볼 때 무리한 것이며 이는 본 개정안이 전체적으로 질적 고양을 추구하는 것에 정면 위배되는 조항이다. 따라서 기존의 법안을 유지하고 다만 농어촌의 경우는 교사난으로 설치가 어려운 현실임을 감안할 때 매우 적절한 조항이라 본다.

2항의 신설안의 경우, 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로 인정하나 굳이 이 조항을 삽입하려면 양성교육기관을 통해 배출된 보육교사의 발전적 통로를 차단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보육교사 1급에게도 교육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따라서 보사부가 마련된 개선안이 옳다고 보는데 양성교육기간의 연장(1200시간-전문대 수준), 보육시설에서 3년의 경험을 통해 1급이 된 보육교사를 포함시키기를 제안한다.

하지만 유아교육대학은 유아전문, 양성교육기관은 영아전문 교사를 배양하기 때문에 취해진 조치라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영아가 유아보다 소홀히 취급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서 당혹스럽다.

보육교사의 질적 강화는 보육교사의 교육, 재교육 강화를 통해 이뤄야 함이 정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모범에(최소한 현재적 판단으로 보건대) 영아가 유아보다 덜 중요하다는 것을 표방하는 듯한 조항을 삽입하는 것에 반대한다.

제12조, 제13조, 제31조는 대표적인 규제조항으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먼저 취소 등의 항목을 시정명령으로 규정하여 신설하고 이에 불복하는 경우 인가취소 등의 단계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라 본다.

제15조 1항에서 공립보육시설 위탁에 대한 조례제정권을 명시하기를 제안한다.

제17조 2항의 경우는 남녀고용평등법(이하 '고평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하거나 고평법에 명시하는 조건으로 삭제하기를 제안한다.

제19조 동의한다.

제20조 동의한다.

제21조 보호자 부담을 공동부담으로 개정하기를 제안한다.

제22조 조례권을 삽입하기를 제안한다.

제23조 고평법에 명시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유지한다. → 25조까지

제25조 기부금 조항신설은 매우 고무적인 조항이다. 아울러 개인이 하는 보육시설에 제도 이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현행법에 보장되어 있는 보호자의 보육비용이 현재 감면혜택되지 않고 있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을 검토하여 실질적 보장을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제27조 동의한다.

제28조 삭제하기를 제안한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권리에 대한 조항이 단 한자도 없는데 왜 이 조항이 모법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보육교사의 권리조항을 신설하는 가운데 이 조항을 유지하든지 아니면 교육법으로 가져가도록 조치를 취하여 모법의 격에 맞지 않는 이 조항을 삭제하기를 바란다.

제30조 국가위임사무와 지방자치사무의 기능이 표명되도록 조항을 만들기를 바란다.

1994. 10. 27

한국 여성단체 연합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한국 여성민우회

한국 여성노동자회 협의회

모임과 모임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 '구로지역 환경을 살리는 어머니 모임' -

아침 눈뜨기 바쁘게 아이 닦달하며 출근하고, 퇴근하자마자 빨래하랴 밥하랴 청소하랴. 정신없는 하루하루 속에 다른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랴.

솔직히 자모회에 나가는 것도 아깝다고 생각될 때가 많았다. 이렇게 바쁜 일과 속에서도 무언가 마음이 흡족하지 못한 것을 느끼며 산다. 왜 이렇게 바쁘게 사는데도 보람 있고 사는 것 같은 느낌이 없을까.

그러던 중 93년 11월 여성노동자회와 지탁연 구로지역 위원회에서 주부대학을 하게 되었다. 내용은 자녀교육과 여성문제, 그리고 지역활동 성공사례였다.

이 교육에 참가한 우리들은, 우리도 무엇인가 작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94년 1월 교육에 참가한 사람 중에 지역활동을 하고 싶은 사람 10여명이 모이게 되었고, 이 모임에서 여러가지 의논 끝에 환경에 관련된 활동을하기로 결정하였다. 각기 자기가 속해 있는 놀이방에서 환경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고 월 1회 전체 모임을 하여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기로 하였다.

2월 전체 모임을 하자, 모두들 무엇부터 해야 할 지 잘 몰라했고 새터어린이집만 환경위원회를 만든 상태였다. 우리는 그동안 경험한 것을 의논하였고 그 결과 놀이방이 속해 있는 동사무소에 환경위원회로 등록하기로 하였다.

3월에 모임을 하면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우리 마음과 같이 쉽게 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동사무소 환경담당 직원들이, 갑자기 아줌마들이 환경위원회로 등록을 하겠다고 하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서류작성을 미루어왔다. 우리 모두들 주민등록 때는 일 외에는 공무원과 일을 해본 적이 없어 당황해 하였다. 그러나 새터어린이집이 속해 있는 동사무소 직원은 너무 친절하게 도와주고, 하는 방식도 가르쳐주었다는 활동보고에 용기 백배하여 모두들 다음달까지 환경위원회 등록을 마치는 걸 속제로 안고 집으로 돌아갔다.

4월 모임에서는 거의 환경위원회 등록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어떤 놀이방은 제대로 홍보가 안되어 애쓰고 모아 놓은 재활용품들(신문, 박스, 헌책)을 고물상 아저씨가 그냥 가져 가기도 하고 동네 할머니들이 몰래 들어와 가져가기도 하여 한동안 수입이 없었다.

동사무소에 환경위원회 등록을 하면 매월 모아놓은 재활용품들을 동사무소가 정해진 고물상에서 실어가고 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통장에 입금시켜준다. 이 실적에 따라 환경장려금을 동회로 부터 받게 되며, 장려금은 때로는 원래 수입보다 많을 때도 있다.

이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공무원들의 안일한 태도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들의 안일

한 태도를 바꾸고 국민을 위하는 공무원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다. 그래서 생각을 모아 새터의 경우같이 잘 하는 공무원은 칭찬과 격려를 해주고 못하는 공무원은 민원을 내기로 하였다. 원래 공무원은 국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칭찬받는 일이 드물다.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장과 구청장 앞으로 좋은 공무원을 만나게 되어 고맙다는 편지를 보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 달라는 편지를 쓰기로 하였다. 결과는 너무 좋았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통하여 항상 참 고만 살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하여야 한다는 체험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모은 수입금으로 놀이방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입할 때 도와줄 예정이며 앞으로 활동하는데 자금으로도 쓰게 될 것이다. 이런 실천활동을 하면서 '주부손에 지구가 있다.'를 읽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다. 가정에서도 조미료 안먹기, 삼푸 안쓰기, 비누 만들어 쓰기 등등 하나뿐인 지구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물과 공기를 마실 수 있도록 하는데 앞장서게 되었다.

그동안 활동을 소개하면 6월 환경의 달 행사를 7월 초에 구로본동 성당, 여성복지회 관과 함께 공동행사를 하였다. 바자회, 비누만들기 시연, 우유팩 휴지교환, 어린이 그린 대회,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을 제작하여 거리에서 나누어 주기, 헌 천으로 시장가 방 제작하여 나누어 주기, 동서식품 병수거 하여 재사용을 촉구하는 서명 받기, 구로구청에 대기오염 측정기 설치 요구 등을 하였다.

동서식품은 월 100만병 이상의 커피병이 나온다고 한다. 이렇게 나온 커피병은 깨끗하게 사용을 한다 해도 거의 다 버려지고 있다.

깨어진 유리가 다시 흠이 되는데는 100년이 걸린다고 하며, 이 유리를 만들기 위해 질 좋은 모래가 필요한데 모래를 얻기 위하여 산을 파헤쳐야 하고 바닷가의 모래사장도 마구 파헤쳐진다. 이는 심각한 자연 파괴를 가져오게 된다고 한다.

우리는 행사를 치르면서 열심히 서명을 받았다. 하루에 400-500명을 받을 수 있었다. 서명을 동서식품에 공문과 함께 보내고, 천주교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 함께 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놀이방 자모회에 서명에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하기도 하여 많은 자모들이 참여해 주었다.

동서식품에서는 병수거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는 것과, 병을 씻는 시설이 없어 어렵다는 것을 알려왔고 앞으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용기 개발에 힘쓰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그러나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이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9월에 우리는 부천 삼익 아파트를 견학하게 되었다. 이곳은 부천 신시가지로 아파트 밀집 지역이었고, 인구도 이 동네만 40,000명이라고 한다. 그러나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16명 뿐이었고 토요일인데도 6시까지 일하고 있었다.

이곳은 우리나라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로 유명한 김성기 할아버지가 사는 곳이기도 하다. 할아버지는 70이 넘는 고령에도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자원을 아낀다는 것에 큰

보람을 느끼고 계셨다.

이곳에서는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되어있어 아파트 마당에 쓰레기통을 볼 수 없었고 모두 아파트 지하에 분리 수거장을 마련하여 마치 예술품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이렇게 모은 재활용품은 모두 공장과 직거래를 통하여 꽤 높은 가격에 팔고 있으며 수익금은 모두 주민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다.

돌아오는 길에 김성기 할아버지께서는, 서울은 사람이 많이 살고 소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재활용 분리수거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걱정을 하시면서 젊은 주부들이 열심히 일해 달라고 부탁을 하셨다. 우리는 부끄러움으로 가득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렸다.

매일 매일이 바쁜 우리지만,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작은 실천이 모여 큰 지구를 살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을 물려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글을 마친다.



■ 건강하게 삽시다

유-소아기의 피부 발진

이흥진 / 한림대학교 부속 춘천 성심병원 소아과 전문의

눈이 마음의 창이듯이 피부는 육체의 창이라고 할 수 있다. 많은 병들이 피부에 그 흔적과 증상을 남기므로 피부에 나타나는 여러가지의 변화를 보고 중요한 진단에 도달할 수 있으므로 피부의 변화는 피부과 전문의만이 아니라 모든 의사들, 특히 내과와 소아과 의사들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유-소아기에는 여러가지의 발진이 들는 질환이 많이 걸리는 시기이다.

아이를 많이 대하시는 선생님들께서 피부에 각종의 발진이 들은 어린이를 많이 대하시리라고 생각한다. 흔히 접하실 수 있거나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질환을 아실 수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탁아활동을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 보고 이번부터 몇회에 걸쳐 중요한 몇가지에 대하여 간단하게 기술해 보겠다.

먼저 아토피성 피부염은 유-소아기에 상당히 많은 아이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질환이다. 이는 소양을 유전적으로 부모로부터 타고 태어나므로 우리 교육의 병명은 태열이라고 하며, 모두 태열이란 병명으로 알고 있다.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나타나는 부위는 얼굴이며, 붉은 색의 바탕에 두드러져 있으며, 심하면 갈라지고 진물이 나온다. 매우 가려워하며, 잠을 설치기도 한다. 심하면 몸통과 사지에까지 병변이 생긴다. 특히 팔다리의 겹쳐지는 부위에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 아토피성 피부염은 피부의 기름기가 적어지고 건조해지면 심해지므로 피부가 건조해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씻을 때 비누를 쓰지 말고, 씻은 후에는 유아용 오일 등을 발라서 보습을 시켜주면 증상을 훨씬 호전시킬 수 있다. 화학 섬유나 모직은 아토피성 피부염을 매우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절대로 입혀서는 안되며, 옷은 순면만을 이용해야 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깨끗해지지 않으면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는 연고제를 바르면 빨리 호전된다.

그러나 아토피성 피부염은 반복될 수 있으므로 위에 이야기한 것처럼 증상을 호전시키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사용해야만 한다.

금년 초여름에는 유난히 홍역환자가 많아서 고생들을 많이 하였다. 홍역의 접종이

보편화되기 전에는 할머니들이 홍역은 살아서 앓지 않으면 죽어서라도 앓는다고 하였을 정도로 우리나라에 보편적이었으며, 전염성이 높았던 대표적인 발진을 동반한 질환이다. 면역성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이 홍역 바이러스와 접촉하면 발병할 확률이 95%가 넘는다. 최근의 홍역 환자 중에는 접종을 시행했던 사람이 많은데 이는 항체 역가의 감소 또는 군주의 변화 등 여러가지 원인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그 기전이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홍역을 앓으면 발진이 생기기 전의 초기 상태에 콧물, 결막의 충혈, 기침을 동반한 고열이 수일동안 지속된다. 이 시기에 입안을 들여다 보면 입안의 뺨에 붉은 바탕에 끝이 노란 반점이 나타나며, 이는 홍역의 특징적인 소견으로 진단에 매우 중요한 소견이다. 홍역때 나타나는 발진은 머리와 얼굴의 경계선에서 부터 나타나서 아래쪽으로 쭉 내려가서 발끝에까지 도달하면 다시 위쪽부터 소실된다. 색깔은 붉은 색을 띄며, 주위로부터 약간 두드러져 올라와 있다.

발진이 소실된 다음에 피부의 색이 갈색으로 변화되며, 이는 상당기간 지속된 후 자연 소실된다. 합병증만 없으면 발진이 발끝에 도달함과 동시에 열이 떨어지며, 회복기에 접어든다. 홍역은 소아기의 매우 심한 질환중의 하나이며, 폐렴등 합병증이 많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 글마당

♣ 탁아소별곡

‘일터아가들의 집’에서 생긴 일

이야기 하나.

성교육 시간이었다.

선생님 : 남자 친구와 여자 친구들에게는 모두 소중한 곳이 있어요. 여자 친구네 속에는 아가네 집이 있고... 그런데 그곳들을 함부로 만지거나 아프게 하면 큰일나지요.

아 이 : (진지하게 쳐다보며) 어떻게 되는데요?

선생님 : 응, 나중에 엄마와 아빠가 될 수 없단다.

아이들 : (저마다 한마디씩 하며) 난 커서 엄마 할텐데. 난, 아빠. 나도..

그날 오후 선생님 방에 한 아이가 급히 뛰어오며 하는 말.

아 이 : 선생님, 큰일 났어요.

선생님 : 왜?

아 이 : (얼굴에 걱정을 가득 담은 표정으로) 예, 친구가요 로봇놀이 하다가 여자친구 배를 찔어요.

그러면서 한마디.

아 이 : 선생님, 이제 엄마 못되면 어떡해요?

선생님 :

이야기 두울.

2학기가 되어 믿음반에서 생활했던 영웅이가 소망반이 되었다. 형이 되어 좋은지 무엇이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무척 이뻐보인다.

어느날 오후 작업시간이었다. 친구얼굴 그리기를 하는데 영웅이가 스케치북에 세명의 사람을 그려왔다.

영웅이 : 선생님!

선생님 : 영웅이 누구 그렸어요?

영웅이 : 친구요.

선생님 : 친구, 누구예요?

영웅이 : 사람이요.

선생님 : (인내심을 발휘하며) 어떤 사람이예요?

영웅이 : 아빠, 엄마 그렸어요.

선생님 : ????

이야기 세엿.

선생님이 보라색 종이를 오리고 있었는데 진일리와 지용이가 열심히 바라보고 있다.

선생님 : (진일리에게) 이게 무슨 색이예요?

진일리 : 초록색이요.

선생님이 보라색이라고 알려주었더니 진일리가 머쓱해져서

진일리 : (애써 초록색을 설명하려 하며) 초록색은 으-음, 초록색은 -.

진일리가 책상이나 다른 물건 중 초록색을 가리키며 말하려는가 보다고 짐작하고 진일리의 말을 기다리는 선생님에게 드디어 진일리가 왈.

진일리 : 선생님, 초록색은 음- 초록색이예요.

(동의를 구하는 듯 옆에 앉아있는 지용이를 바라보며) 초록색은 초록색이지-임?

지용, 선생님 : !!!

이야기 네엿.

여름캠프를 가는 것에 들떠서 2주일 정도를 입을 다물지 못하고 웃고 다니던 승룡이는 기차여행도 무척 좋아한다. 기차에 타서 창밖을 보며 웃고 소리치던 승룡이가, 어린이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계이트 옆의 잔디밭에서 뛰놀고 가려고 멈추었더니 아주 큰 소리로, “야! 동물원이다!”하고 말한다.

친구들은 아무 대꾸없이 차에서 정신없이 내리는데 승룡이는 계속 동물원이라고 말하며 좋아하더니 차에서 내려 잔디밭을 바라보면서 입을 쭉뚫고 목에 힘을 주며 “봐! 동물원이지!”라고 아주 자신있게 말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승룡이는 오후에 집에 돌아가는 차안에서 선생님을 다시 한번 웃게 한다.

감수리를 가다보면 기차길이 나온다. 그것을 보고 승룡이를 비롯한 아이들이 “기차길이다!”라고 말하면서 기차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며 그곳을 지나갔는데 갑자기 승룡이가 “야아! 또 기차길이다!”하며 손으로 창밖을 가리킨다. 승룡이가 가리킨 곳은 공장굴뚝에 길게 뻗어있는 사다리였다.!!

승룡이는 기차여행으로 무척 들뜨고 기분좋은 하루였다 보다.

■ 참새 방앗간

한 가 위

최종열 / 꽃동네놀이방 졸업자부

어렸을 적의 추석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행복했던 기억들로 채워져 있다. 추석 전날부터 방문하실 일가친척분들과 또래의 어린이들을 기다리던 설레임과 맛있는 제사음식의 준비에 끼어주지 않는다고 불구하고 억지로 끼어들어 음식 준비를 도왔던 기억들.

차례가 끝나면 으레히 제사음식을 커다란 양동이에 섞어 부어 비빔밥을 만들어 온식구가 먹어치우던 기억들.

식사가 끝나고 나면 이복이 고향이셨던 아버지의 낚시행에 동반하던 기억. 아마도 아버지는 두고온 고향과 어른들을 생각하시며 쓸쓸함을 달래시기 위함이라.

일가친척 어른들께 얻은 용돈만해도 주머니가 워낙에 불룩해지던 차에 도대체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를 정도로 두둑했던 어렸을 적 추석때의 막강한 경제력도 어린 나의 추석의 기억에 크나큰 행복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그런 추석의 행복하고 풍족했던 기억으로 나는 항상 추석은 풍족하고 좋은 년중행사로 기억만 하고 성장하여 왔다.

세월이 흘러 지금은 나의 일을 갖고 열심히 생활하는 가장으로 성장하였고, 이제는 어릴적 나와 같은 두팔로 서울의 한 모퉁이 우리 보금자리에서 건강하게 자라주고 있다.

너무도 인자하셨던 아버지의 제사가 추석을 앞둔 4일 전이고 또 그날에서 1주일전인 내 어머니의 생신이어서 지금은 추석을 앞두고 두번의 가족행사가 있어 고향을 가야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서울살이 하는 우리로써는 여간 힘겨운 추석전 나들이가 아닐 수 없다.

작년처럼 일이 어려워 주머니에 단돈 2천원이 있었을 때는 아예 고향에 3번 내려갈 것을 한번도 내려가지 못했었는데, 그때의 마음은 너무도 안타까웠었고 어렸을 적의 추억만 되새기며 몇일을 집에 누워서만 보낸 기억이 있다.

세월이 가서 또 금년의 추석 전이다. 금년도 크게 나아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져 있는 상황이고 나는 또 추석을 앞두고 고향을 생각한다.

'금년부터는 3번이 아니라 30번이라도 고향에 내려갈 수 있으면 무리를 해서라도 내려가야지...'

그곳에는 내 어려서부터의 모습들이 응축되어 있고, 나는 그 모습들의 조각들을 소중히 찾아봐야 겠다.

■ 우리들의 목소리

은진이, 종해의 길고도 짧은 여행일기

정은진 / 봉천동애기방 교사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길게 신혼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글을 써야한다는 게 조금은 억울하다(?).

다시 수첩을 꺼내들고 8박9일의 일정을 되짚어보니 그날 그날의 우리의 행보가 다시금 새롭게 느껴진다...크-

9월10일, 무사히 혼례식을 끝내고 우린 큼직한 배낭 하나씩을 등에 매고 제주행 비행기에 올랐는데, 예고머니! 허리휘게 열심히 절해서 받은 절값을 두고 온 것이 아닌감. 난감하긴 했지만 '어찌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제주에 도착하니 후배가 마중을 나와있었다. 4박 5일간 후배의 알찬 일정에 따라 우린 제주땅 곳곳을 그리 뺨박하지 않게, 그렇지만 재밌고 알차게 보내고 아쉬운 맘으로 제주를 떠나 목포로 향했다.

하늘에서 바라본 고만고만한 이름모를 섬들과 질푸른 바다빛깔은 너무도 인상적이었다. 서울에서 내려와 합류한 후배와 거하게 낙지요리를 먹고 유달산으로 갔다. 유달산에서 내려다본 목포시는 마냥 한가롭고 원지 위축된듯한, 너무도 내려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늦장을 부려 조금 늦게 목포를 출발, 영암 월출산을 찾아가다. 도갑사 입구를 모르고 그냥 통과하는 바

람에 영암읍까지 와서 되돌아가야했다.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마침 장이 서는 날이라 장구경을 한바탕하고 도갑사로 다시 출발!! 평일이라 겁나게 한적한 산길을 우리끼리 오르자니 괜시리 겁도 조금 나고, 어쩌다 한 두 사람 만나게 되면 어찌나 반갑던지...

늦은 출발 때문에 정상인 천황봉까지는 무리였고 월출산의 자랑(?) 역새밭까지 오르기로 했다. 산꼭대기에 그리 넓은 역새풀밭이 펼쳐져 있다는게 신기했고, 그곳에서 내려다보이는 산아래 마을들은 펍이나 정겨웠다. 다음엔 반대방향인 천황사에서 출발하여 도갑사쪽으로 내려오는 완주코스를 꼭 다시 찾아오리라 마음먹고.

바빠 서둘러 해남 두륜산 대흥사 입구에 도착하니 해가 지고 있었다. 대흥사에 잠시 들렀다가 우리의 목표지점 일지암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힘들게 올랐다. 작년에 한번 다녀간 적이 있는 곳인데 꼭 다시 와보고 싶던 곳이었다. 여러 책자에 소개된 이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오가서 아주 고달파 하시는 듯 했지만 우리에게 아주 좋은 시간들이었기에...

우리가 씩씩거리고 그곳에 도착했을 땐 이미 어둠이 온 산을 덮고 난 후였다. 스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그때 본 적이 있던, 자칭 일지암의 주인(스님 안계실때)인 그 사나이를 만나 일년전 기억을 되살리는데 성공, 우린 마치 오랜 친구들 마냥 살아가는 예기, 음악애기들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장시간 회포를 풀었다. 구수한 녹차와 다양한 음악소리와 함께...

일지암에서 편하게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해남읍으로 나왔더니 오늘은 해남

장날. 추석전장이라 더욱 풍성한 장터를 한바퀴 돌고 그곳에서 소문난 '천일식당'이란 곳을 물어 물어 찾아가 이 집의 명물 '떡갈비'를 시켰더니 한 상 가득 스무가지가 넘는(처음 보는 음식들도 많았음) 맛갈스런 음식들이 나와 우릴 놀라게, 그리고 기쁘게 했다.

거하게 배를 채운 후 무거운 배를 안고 완도에 도착. 보길도행 막배를 타기 전까지 바닷가 자갈밭에서 한잠 자다가 아슬아슬하게 보길도행 페리호에 오를 수 있었다. 한가위를 며칠 앞둔 터라 고향으로 향하는 귀성객들이 꽤 많았다. 페리호 갑판위에서 오래간만에 무지개도 보고, 정말이지 그림같은 석양을 볼 수 있었다. 수많은 작은 섬들을 지나 한시간 반정도 걸려 보길도에 도착. 처음 와 보는 낯선 땅인데도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게 이상했다. 불빛이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어두운 마을 입구에서 서성거리다 민박하시는 아주머니를 만나 쉽게 방을 잡을 수 있었다. 그리고 보길도에서 우릴 가장 먼저 반겨준 것은 반딧불이었다. 아주 어릴 적 시골에서 간혹 본 적이 있는 반딧불이 이곳에서 아직 살아남아 옷자락 여기저기로 날아들어 우리 가는 길까지 동행해주었다. 다음날 이른 새벽, 뽕죽산행 첫차를 타기로 했는데 시간을 잘못 알아 차를 놓치는 바람에 우린 걸어서 겁도 없이 도전했다가 죽을 뻔 했다. 모두 지쳐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는데 구세주처럼 버스 등장. 다행히 뽕죽산 앞까지 가서 기념촬영만 하고 버스시간 간격이 너무 멀어 다시 타고간 버스로 금방 나와야 했다. 보길도엔 버스가 딱 두대 있는데 하나는 이쪽 뽕죽산행이고 다른 하나는 예송리

라 하는 바닷가쪽으로 가는게 있다.

예송리쪽은 그나마 포장이 되어, 먼지도 덜나고 덜컹거림도 덜했다. 바닷가를 끼고 쪽 달리다 예송리란 곳에 도착. 크진 않지만 아주 정돈이 잘 되어있는 깨끗한 마을이었다. 자잘한 검은 조약돌이 깔린 해변가에서 우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돌과 함께 놀았다. 바닷물이 밀려와 빠져나갈 때 그 조약돌 구르는 소리란...크-. 나의 표현력 부족으로 보다 적절히 표현을 못하는게 그저 아쉽지만 암튼 그 이른 소리를 아주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다. 그 멋진 소릴 들으며 해변에 한참을 누워있다가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애써 옮겨 고산 윤선도 유적지를 향해 앞으로...

그쪽은 버스가 다니지 않아 마냥 걷다가 간신히 트럭 뒷칸에 끼여 근처까지 갈 수 있었다. 마을입구에서 동네 어르신 한 분을 만나 산중턱에 있는 글방(서당)으로 가는 도중 눈깜짝할 사이에 샤샤샤- 그 분은 어느새 뱀 한마리를 잡아 망에 넣고 계셨다. 가끔 이 산 저 산 계곡을 다니시면서 뱀을 잡아 파신다고 했다. 수입이 꽤 짭짤하신 모양이다.

글방에 도착해서 이 글방을 새로 지은 이야기며 아랫마을의 유래 그리고 앞으로 개발 예정인 새로운 계획들까지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어르신과 헤어져 내려와 윤선도가 풍류를 즐기시던 부용동 세연정이라는 정원을 갔다. 보길국민학교와 붙어있는 이곳은 내겐 생각했던 것 만큼 별 감흥을 주지 못했다. 정원치고는 꽤 넓은 이곳에 저 어마어마한 바위들을 어떻게 가져다가 이런 규모의 정원을 꾸밀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작업에

동원되어 고생을 해야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무튼 이런 빼어난 자연 속에서 윤선도의 그런 작품들이 나올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은 분명 들었다. 시간이 없어 여러 곳을 다녀보진 못했지만 잊을 수 없는 멋진 곳으로 기억에 남을 것이다.

다음날 다시 오마는 다짐을 하고, 다음날 아침 우린 해남 땅끝으로 가는 첫 배를 탔다. 땅끝에 도착하니 으- 고향으로 가려고 밀려 서있는 친족을 보고, 이 고생들을 하면서도 고향을 찾아오는 이들의 심정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우리도 어느새, 광주 공항에서 다시 서울을 향해 날아오고 있었다. 길고도 짧은 우리의 여행 이렇게 마감이 되고....



■ 탁아계 풍향

1994 어린이와 책 문화행사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책을

어린이도서연구회와 몇몇 지역 학부모 모임들이 '어린이와 책'이라는 문화 행사를 연다. 좋은 책 전시와 판매 그리고 독서 강연 등 다양한 행사를 마련한다. 자세한 문의는 어린이도서연구회 (733-4992)로 연락하면 된다.

어린이도서연구회(11/7-12, 어도연사무실)
도서전시회, 그림전시회, 독서강연(11/7, 11/9)

경기. 광명모임(11/4-5, 광명사회체육센터)
도서전시회, 그림전시회

인천. 부평모임(11/11-12, 부평4동 성당)
도서전시회, 그림전시회, 인형극 공연(11/11),
독서강연(11/10)

노원. 상계모임(11/2-3, 시흥 작은자리강당)
도서전시회, 그림전시회, 인형극 초청공연
(11/12), 독서 강연(11/3), 슬라이드 상영
(11/3)

강동. 고덕모임(11/7-9, 고덕 아름드리 어린이 책방)
도서전시회, 그림전시회

경북. 안동모임(11/12-16, 안동 한마음도서관)
도서전시회, 그림전시회, 독서강연(11/12)

'94 하반기 어린이집 교사
연수안내

삼성복지재단 어린이개발센터에서는
보육교사를 위한 '94년도 하반기 교사연
수회를 마련하여 부모면담 기법에 대한 강
의에 이어 11월에 문제행동에 대한 강
의를 진행한다. 아동의 문제점은 어떻게
발견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
엇인지 알아본다.

때: 11월18일(금) 오후 3-5시
곳: 삼성어린이개발센터 세미나실
주제: 문제행동 발견과 행동수정
강사: 오경자 교수(연세대 심리학과)
참석인원: 50명 선착순
참가비: 없음
신청방법: 전화 (02) 417-8465~6
담당 김미경

<연합회 10월 도서, 자료 목록>

기독신보 94.9.10
전국약사신문 94.9.6 /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들소리신문 94.9.18
유아교육신문 94.9.19
서울시민신문 94.9.14
동화읽는 어른 1994.10 / 어린이도서연구회
의보연대회의 소식 94.9 /
의료보험연대회의
들소리신문 94.9.25
운동본부소식 94.9. /
주한미군번외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노동자신문 94.9.27
열린정책회의 94.9.14 /
열린정책회의 운영위원회
월간 말 10월호

함께 걸음 94.9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통일샘 1호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어린이와 책 / 어린이도서연구회 연구실
가족공동체의식의 고양과 민주화 1994. 9
/ 이순형

환경과 사회 1994. 가을 제4호 /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창립
대회 자료집 1994.9.10 /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어린이개발센터소식 창간호 /

삼성어린이개발센터
동화읽는 어른 28 / 어린이도서연구회
글읽기 76 / 어린이도서연구회
월간 유아 10월호 / (사)한국유아교육원
11월 교육계획안 / (사)한국유아교육원
호루라기 94.9. 창간호 / 여성상담전화
지역주부한마당 자료집 94.9 /

충북의정모니터 연대모임
충북어민 여름, 가을 합본호 /
충북여성민우회

들소리신문 94.10.9
유아교육신문 94.10.10
시민체육 94.10 / 서울특별시 체육회
함께 하는 우리 문화 창간호 /

군포문화센터
텔레비전 모니터 종합보고서 1992 /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텔레비전 모니터 종합보고서 1993 /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텔레비전 모니터 종합보고서 1994(1) /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제11회 서울YMCA 청소년 비디오축제 1994
작품집 / 서울YMCA
어린이영상물 <무적파워레인저>관련자료집
/ 서울YMCA시청자시민운동본부
청소년폭력영화와 문화상업주의 / 서울YMCA
통일샘 3호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산돌소식14 / 1994.9. 산돌노동문화원
해피타임즈 94.10.12
말지 10월호

The Politics of Parenthood / Mary
Frances Berry
Who Pays for the kids? / Nancy Folbre

익터아가들의 집, 우리동네어린이집, 혜송
아기둥지 학보 잘 받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각종 도서관 자료가 저
칙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 소식과 소식

연합회
소식

- 제7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송실대에서 막을라

매년 가을이면 지탁연의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는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가 올해로 7회를 맞이하여 송실대 채플에서 2시부터 3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지탁연의 주최와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 등에서 주관한 이날 행사는, 어린이집 교사와 자모, 자부, 아동, 자활 등 700여명이 참석하였다.

본행사는 각 지역의 깃발입장을 시작으로 하여, 1회에서 6회에 이르는 지난 어머니 큰잔치의 모습들을 담은 슬라이드 상영, 노래 공연, 아동윺동, 사회극, 토론회, 막대동화 시연 등이 채플 무대에서 펼쳐졌는데, 특히 구로지역 어머니노래단의 윺동과 노래는 모든 참석자들이 일어나 함께 하는 등 반응이 좋았다.

그 외에도 채플 주변에서는 각 지역 어머니들이 만든 작품 전시회 및 아동야외놀이마당, 십터, 인형극이 진행되었다.

올해 어머니 큰잔치는 3년간 야외에서 진행되다가 다시 실내공간을 빌어 개최되는 등 다양한 시도를 보이려 하였으며, 전시회나 무대공연 등에서 지역에 존재하는 자소소모임을 적극 활용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 구로구 민간보육시설연합회 창
립보고대회 및 토론회 개최

지난 2월 창립된 구로구 민간보육시설연합회(이하 '구로구 민보련')에서는 창립보고대회 및 토론회를 10월 24일(금) 오후 2시 구로구민회관 회의실에서 진행하였다.

50여명의 구로구 민보련 회원과 타 지역의 민보련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련된 이날 행사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각계의 시각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황현주씨(국제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원 강사)의 발제와 '구로구 민간보육시설의 발전방안 모색(정성희 구로구 민보련 회장)', '우리 아이들에게 복지 혜택을!(황현숙 톨튼이 어린이집 자모)'라는 제목의 발제와 토론이 있었다.

본 회에서는 최현숙 회장과 서정은 특위 간사가 참석하였다.

구로구 민보련에 가입하기를 희망하는 구로구 소재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은 863-0468(박상희 민보련 총무)로 문의하면 된다.

- 조직발전을 위한 각 집 대표
모임

10월 20일(목) 여성평화의 집 지하회의실에서는 조직발전을 위한 각 집 대표모임이 있었다.

서울, 경인지역의 지탁연 소속 어린이집 대표교사 30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린 이 모임에서는 지탁연이 현재 맞이하고 있는 각각의 상황에 대한 인지와 함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해 세가지 모델의 어린이집 운영사례 등을 발제를 통해 나누었다.

급변하는 주, 객관적 상황으로 인해 중앙과 지역과의 연계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각 집대표들의 역할이 보다 중요하게 자리잡혀야 할 것이다.

- 민자당 영보법 개정안 발표,
지탁연 의견서 제출

민자당(주안자 의원)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대한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미 보사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을 내놓은 상태에서 시행령이 아닌 모법의 개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주목을 끌고 있는 민자당의 개정안은 보육대상 아동의 개념 확대와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신고조치 완화(인가제→등록제), 직장보육시설로 하여금 고평법에 입각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합회를 비롯하여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한국여성민우회 등은 민자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0월 26일 제출하고 미비한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

- 연합회, 정무제2장관과 오찬
나눔

본 연합회 최현숙 회장을 비롯하여 사무국원을 포함한 지탁연 식구 10인이 상의클럽에서 정무제2장관과 오찬을 나눴다.

10월 29일(금) 이루어진 오찬은 정무제2장관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자리에서 정무제2장관과 지탁연은, 한국 보육사업의 현실과 이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지탁연의 현황과 우리나라 보육사업을 향상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함께 논의하였다.

- 영아탁아교사 합숙가져

10월 15,16일 양일에 걸쳐 영아탁아 발전을 위한 엠티를 북한산 밑에서 가졌다.

이번 엠티는 영아탁아교사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다우리어린이집, 새

터어린이집, 올망졸망어린이집, 푸른솔에기방, 광주 도담도담어린이집 교사들이 모였다.

영아체조에 대한 이애용(새터어린이집)교사의 강의와 실습이 진행되었으며, 16일은 북한산 산행을 하였다.

이번 영아탁아교사 엠티는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격려하고, 영아탁아모임 활성화를 위해 다같이 노력하기로 결의하는 자리였다.

다음 모임에서는 교육을 중심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영아탁아모임은 영아를 보기 때문에 더 모임을 갖기 어려우나 전체 영아탁아교사들의 관심 속에서 활성화될 수 있기에 많은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 * * * *

사람들

* 출산하셨습니다.

본 연합회 부회장으로 애쓰시던 남미영씨(새터 어린이집)가 지난 10월 4일 귀여운 남자아이를 무사히 출산하셨습니다.

남미영 부회장과 아기의 건강을 지탁연 식구들의 이름을 빌어 기원합니다.

* 결혼하셨습니다.

동부지역 오손도손에기방의 나은미씨가 10월 22일(토) 오후 2시 강남 YMCA에서 화촉을 밝히셨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성남 푸른솔에기방의 김지연씨가 9월 24일 아현동 서울침례교회에서 인생의 새출발을 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두분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 일본연수를 다녀오셨습니다.

구로지역의 전미경(새터어린이집 교사), 김숙자(튼튼어린이집 교사) 두분이 지난 10월 24일부터 일주일간 일본 도쿄를 방문하고 오셨습니다. 여성노동자회의와 함께 한 이 방문기간에는 보육에 관한 심포지움과 시설견학이 있었습니다.

※ ※ ※ ※ ※ ※ ※ ※ ※

연합회
10월 일정

- 9/22 편집회의
- 23 여연 정사위
- 25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
- 27 서울경인지역 아동분과회의 어머니큰잔치 2차 준비모임
- 28 여연 과제개발위원회 2차워크샵
- 29 여연 대표자회의 조직발전특별위원회
- 30 지방 아동분과회의
- 10/ 4 지방지역대표자회의
- 5 어머니 큰잔치 3차 준비모임
- 6 조직발전특별위원회 정책연구부 모임
- 7-8 수원 아카데미 지자체교육 (최현숙 회장 참가)
- 8 인천시 여성정책 평가 및 토론회
- 10 임시지역대표자회의
- 11 지방지역대표자회의
- 12 어머니 큰잔치 4차 모임 기사발위원회
- 병원노련 교육(교육부장)
- 13 조직발전특별위원회

- 10/14 구로구 민보련 창립 보고대회 및 토론회
- 여연 정사위
- 교육연구부 모임
- 15-16 영아탁아모임 연비
- 17 정책회의
- 18 서울경인지역 아동분과 회의 한국민보련 준비위 (최현숙 회장 참석)
- 19 어머니 큰잔치 5차모임
- 20 조직발전을 위한 각 집대표 모임
- 21 교육연구부 모임
- 23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
- 25 지방아동분과 회의
- 26 어머니 큰잔치 6차 준비모임
- 28 정무제2장관 오찬
- 29 어머니 큰잔치 진행요원 전체모임
- 30 제7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 11/ 2 "여성평화의 집" 운영이사회
- 3 보사부 면담(최현숙 회장) 확대 조직발전특별위원회
- 4 한국민보련 준비위 모임
- 5 교육연구부
- 5-6 정사위교육

■ 벼룩시장

※ 벼룩시장에서는 여러분이 알고 싶은 모인, 수익사업, 물론교한 등의 정보를 실습니다. 정보를 주시고자 하는 회원께서는 지체없이 편집부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들꽃 어린이집 개원을 축하합니다.

농촌탁아소 들꽃 어린이집이 10월 22일 개원하였습니다. 조정희, 이정옥 두분의 선생님이 경남 진양군 금산면 창사리에서 새로이 아이들과 의욕에 찬 활동을 시작합니다. 힘든 여건 속에서도 아이들의 보호와 교육을 위해 운영이 되는 농촌탁아소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더불어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들꽃어린이집 주소 : 경남 진양군 금산면 창사리 1022-3
전화번호 : 0591)761-0843

♥ 인형을 드립니다.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서, 정성껏 모은 인형을 필요로 하는 곳에 보내드립니다. 원하시는 곳은 연락주세요. (지방 가능)
정정현(동국대학교 경영학과)
032)578-1275, 883-0997
호출 015-356-3861

'동물은 내 친구' 색칠책자를 배포합니다.

동물을 키우는 집안이나 평소 아이들의 관심을 쉽게 설명하면서 색칠이나 놀이를 할 수 있도록 수익사가 직접 만든 '동물은 내 친구'를 무료배포합니다. 희망하시는 어린이집에서는 아동수에 맞춰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 오윤정 교육부장

〈농촌탁아소 제경마련을 위한 수익사업〉
여러분의 도움에 힘입어 열심히 활동하시는 농촌지역 탁아소에서는 첫술판매를 다시 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격 3,000원(1세트 4개입)

모입니다!!
서울경인지역 자원활동가 대표자회의

이제 어머니 큰잔치도 무사히 마쳤으니 다시 우리의 얘기를 나눠봅시다.

일시 : 94년 11월 20일(일) 오전 11시
장소 : 중앙대학교 사랑터 (학생회관4층)
안건 : 어머니큰잔치 평가 및 겨울합숙논의

자세한 사항은 담당자 황미혜를 찾으세요.

■ 편집부에서

* 10월호는 본 회에서 주최한 '제7회 일하는 어머니 큰잔치' 행사 준비 관계로 예정보다 늦게 발간되었습니다. 이점 여러분께 죄송하게 여깁니다.

* 어머니 큰잔치를 준비하느라 도움을 주신 지역교사들 및 자활가들 수고하셨습니다. 어머님들 수고하셨습니다.

* 여러분의 참여가 부족한 관계로 이번 호를 마지막으로 '참새방앗간' 코너를 정리합니다. 그동안 '참새방앗간' 앞으로 원고를 보내주신 몇몇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 호에 실린 '한가위'는 늦게 도착한 9월호 주제원고를 실었습니다.

* 작은 기획 '아이들과 함께 하는 우리네 전래놀이'는 원고가 전달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이번 호에는 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1월호를 기대해 주세요.

*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이 제때 제곳에 도착하는지 궁금합니다. 혹 받아보시지 못한 소식지가 있으면 본 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받아보신 후 잘 받았다고 연락을 해주시면 소식지를 만드는 편집부원 모두에게 힘이 될 수도 있겠죠.

* 반송되는 소식지가 간혹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신 회원께서는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네 아이들"에 대한 여러분의 소감이나 의견을 받습니다. 원하시는 내용이나 부족한 부분이 느껴지신 분들은 서슴없이 연합회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

* 행사준비 관계로 지난 한달간 자료 회원 회비를 납부하신 분들을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11월호에 회비 납부상황에 대해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기간이 마감되었거나 구두신청 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께서는 온라인 입금 후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월동준비를 잘 하자.

- 미향

* 햇볕은 따스한데 몸을 움츠리게 되는 걸 보면 버얼씨 가을은...

어느새 장충동에서 1년을 보냈다...

- 미혜

* 너무도 바쁜 하루들이다.....

- 희연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 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실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외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일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0,000원 1년 구독 20,000원)

♥지탁연 가족이 함께 만든 이 책을♥

어린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펴낸곳: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 1가 38번지 84호
여성평화의 집 3층 (우)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펴낸이: 최현숙
무은이: 정희연, 변미양, 황미혜
펴낸날: 1994년 11월 5일